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 상 현 부 연구 위원
정 대 희 전문 연구 원
안 수 정 연구 원

연구 담당

이 상 현 부연구위원
정 대 희 전문연구원
안 수 정 연구원

연구총괄
국가별 농업부문 상품양허 분석
협상 동향 및 기타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분석

머 리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일본,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5년 10월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된 양허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자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양허수준보다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협상과정과 협정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TPP 가입과 참여 시기 등 TPP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협정개요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19차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각료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TPP의 주요 협정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양허분야

협정문 공개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TPP 회원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상당수의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 비중이 매우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철폐를 하는 세번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의 비중이 높았다.

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국가들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 감축을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베트남은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이다.

또한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특히 TPP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였으며,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다.

일본과 칠레는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하여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멕시코는 국가별로 관세감축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동일 세번 내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하여 양허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민감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가격밴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번에 대해서 관세는 철폐하였지만 가격밴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상품양허분야 외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그 밖에 농산물 관련 TPP 협정 주요 내용 중 우리나라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이다.

TPP 협정의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TPP는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제2장 25조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특혜 금융제도 철폐,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PP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TRQ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TRQ 관리와 자격요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의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사점

TPP 협상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 FTA보다 양허수준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특히 농업분야가 민감한 우리나라는 TPP 농업분야의 협상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을 비롯하여 TPP 회원국 상당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PP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한다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많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을 한 상태이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TPP 회원국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과 같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의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TPP 협상은 상품분야 이외의 규범분야에서 기존의 WTO 협상보다 강화된 협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여 시 우리나라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BSTRACT

Results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The 12-country's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were finally concluded on 5 October 2015 through 19 times of official meetings as well as several ministerial meetings and informal meetings. The text of TPP agreement consists of 30 chapters including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addition, it includes provisions on Rules of Origin, Trade Remed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Investment,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 Commerce, Government Procurement, Competition Policy, State-Owned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Environment, Cooperating and Capacity Building, Competi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Developmen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gulatory Coherence,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Dispute Settlement, Exceptions etc.

Since TPP negotiations were focused on opening markets of all goods, TPP was a pressing issue for Korea to which the agricultural industry responds very sensitively. Most of the TPP participants including the US have put efforts to consider internal sensitiveness using various ways. Thus, when we enter TPP,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secure a certain level of sensitiveness.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not easy to present its bargaining power if Korea participates alone. Moreover, Korea has already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most of the TPP participants and the level of tariffs varies depending on the FTAs. This may cause higher level of tariff reduc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strategy which can secure Korea's sensitiveness enough by referring to negotiation results among the TPP members.

Given that there are countries which ha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PP negotiations such as Taiwan, the Philippines, Colombia, Thailand etc., the second round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negotiate with new members. Besides, since TPP has set stronger and stricter standards on Rules than existing WTO level, it is expected for Korea to change its overall system.

Thus, Korea needs to analyse impact of TPP and prepare more throughly.

Researchers: Sang Hyeon Lee, Dae Hee Chung, Soojung Ahn

Research Period: 2015. 6. ~ 2015. 12.

E-mail address: shlee@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TPP 협상 과정

- 1. TPP 배경 및 의의 5
- 2. TPP 협상 과정 7
- 3. 협정문 구성 11

제3장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 1. 호주 15
- 2. 브루나이 18
- 3. 캐나다 20
- 4. 칠레 22
- 5. 일본 25
- 6. 말레이시아 30
- 7. 멕시코 33
- 8. 뉴질랜드 37
- 9. 페루 39
- 10. 싱가포르 42
- 11. 미국 44
- 12. 베트남 60

제4장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	
1.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65
2.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66
3. TRQ 관리방식	66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6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69
부록 1. 각국의 TRQ 양허현황	75
부록 2.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분석과 시사점	92
참고 문헌	144

표 차례

제2장

표 2- 1.	TPP 협상과정	10
표 2- 2.	TPP 협정문 구성	14

제3장

표 3- 1.	호주의 농산물 양허결과	17
표 3- 2.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결과	19
표 3- 3.	캐나다의 농산물 양허결과	22
표 3- 4.	칠레의 농산물 양허결과	24
표 3- 5.	일본의 농산물 양허결과	30
표 3- 6.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양허결과	32
표 3- 7.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결과	36
표 3- 8.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결과	38
표 3- 9.	페루의 농산물 양허결과	41
표 3-10.	싱가포르의 농산물 양허결과	43
표 3-11.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45
표 3-12.	미국의 對 호주 농산물 양허결과	47
표 3-13.	미국의 對 브루나이 농산물 양허결과	48
표 3-14.	미국의 對 캐나다 농산물 양허결과	49
표 3-15.	미국의 對 칠레 농산물 양허결과	50
표 3-16.	미국의 對 일본 농산물 양허결과	52
표 3-17.	미국의 對 말레이시아 농산물 양허결과	53
표 3-18.	미국의 對 멕시코 농산물 양허결과	54
표 3-19.	미국의 對 뉴질랜드 농산물 양허결과	56
표 3-20.	미국의 對 페루 농산물 양허결과	57

표 3-21. 미국의 對 베트남 농산물 양허결과	59
표 3-22. 베트남의 농산물 양허결과	63

제5장

표 5- 1. TPP 회원국의 유형별 농산물 양허결과	71
-------------------------------------	----

부표 차례

부표 1- 1.	캐나다의 TRQ 양허현황	75
부표 1- 2.	일본의 TRQ 양허현황	78
부표 1- 3.	말레이시아의 TRQ 양허현황	83
부표 1- 4.	멕시코의 TRQ 양허현황	85
부표 1- 5.	미국의 TRQ 양허현황	86
부표 1- 6.	베트남의 TRQ 양허현황	91
부표 2- 1.	WTO에 통보된 TRQ 물량의 관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중 (2011년 기준)	101
부표 2- 2.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별 품목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2002~2011년)	102
부표 2- 3.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중(2011년 기준) ..	104
부표 2- 4.	TRQ 관리방식별 수입이행률 비교	105
부표 2- 5.	주요국의 TRQ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이행률(2002~2011년 평균) ..	107
부표 2- 6.	TRQ 물량 수입을 위한 추가조건 부과현황	108
부표 2- 7.	일본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0
부표 2- 8.	캐나다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0
부표 2- 9.	한국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1
부표 2-10.	태국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1
부표 2-11.	필리핀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2
부표 2-12.	인도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2
부표 2-13.	인도네시아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2
부표 2-14.	바베이도스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112
부표 2-15.	우리나라 WTO TRQ 품목별 운영 현황	116
부표 2-16.	WTO 농산물 TRQ 관련 분쟁 사례	118
부표 2-17.	WTO 농산물 TRQ 관련 분쟁 사례(계속)	121
부표 2-18.	TRQ 물량 수입관리 관련 농산물 수출입국의 기본입장	123
부표 2-19.	TRQ 관리방식 관련 각료결정문 주요 내용	127
부표 2-20.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구조	129
부표 2-21.	WTO 회원국의 연도별 TRQ 품목 수	137

부도 차례

부도 2-1. TRQ 제도의 경제적 의미	95
부도 2-2. TRQ 제도와 실제 교역상황	97
부도 2-3. TRQ 제도와 시장접근이행률 차이	9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공식 참여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14년 말부터 12개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음.
 - TPP는 상품양허,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동식물검역(SPS)¹, 무역상 기술 장벽(TBTs)²,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정부의 경쟁정책,

¹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을 통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다(외교통상용어사전).

²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들이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함한 21개 분야가 협상 대상임.

-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지만, 기존 TPP 12개 참여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환영하면서도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참여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 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참여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자동차, 낙농품, 의약품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2015년 9~10월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타결됨.
-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타결된 양허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양자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TPP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 5일자로 타결한 TPP 협정문의 농업부문 양허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기존의 FTA에서 Mega FTA 체제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가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농업부문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과 참여 시기 등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

- 특히 각 TPP 회원국이 협상에서 국별 민감품목을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양허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쌀, 쇠고기, 주요 과일과 같은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장에서는 TPP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TPP 협상 과정을 서술하였음. 또한 TPP 협정문 구성을 소개하였음. 3장에서는 TPP 회원국별 상품양허결과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를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5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 연구는 TPP 회원국의 협상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TPP 협정문 분석과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 회원국별 관련 보고서(미 의회 보고서) 및 TPP 관련 부처관계자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와 TPP 협정문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함.

제 2 장

TPP 협상 과정

1. TPP 배경 및 의의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acific Four: P4)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의 협정은 2005년 6월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되었음.
 - 2006년 5월 28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의 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브루나이는 7월 12일자, 칠레는 11월 8일 자로 발효되었음.
 - P4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발효 1년 차에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P4 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품 분야,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임.

-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어서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하였음.
 - P4 체제의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조명을 받지 못

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참여의사 표명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의 전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 2008년 9월 미국과 11월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에 공식 가입하였고,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음.
- 2011년 11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등도 참여의사를 밝혔음.
 - 2012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식 가입하였고,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총 12개국에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함.
 - 2013년 12월 우리나라는 WTO 각료회의에서 TPP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TPP 12개 회원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음. 현재는 양자협의를 중단되어 있으며, 기존 12개국 간의 TPP가 체결된 이후에 재협의를하기로 함.
- 2015년 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 (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TPP는 세계 최대의 Mega FTA로 부상하며 전 세계 GDP의 약 40%,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됨.
 -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이 추가 가입 의사를 표명함.
 - TPP는 미국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자유무역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견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로, TPP 12개국 중 9개국과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의 FTA는 타결되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멕시코와 일본은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 중임.
 - TPP 참여국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으로 TPP 가입 시,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계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TPP는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과 환경, 경쟁법,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 SOE)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WTO DDA 협상의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 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WTO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오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TPP가 추진되었고, 따라서 TPP 협정문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으로 자리 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급부상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WTO DDA 협상과정에서의 협상력 확장에 대응하여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

2. TPP 협상 과정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P4 체제로 출범했던 P4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확대되었음.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의 TPP 가입 이후 처음으로 2010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8개국의 1차 공식협상을 개시하였음.
 -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200명 이상의 협상 대표단이 모여 높은 수준과 포괄적인 범위의 개방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고, 전반적인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협상단은 4일 동안 원산지규정, 농업,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법과 제도적 이슈, 통신서비스, 환경, 노동, 투자, 의류, 전자상거래, 경쟁법, 무역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미국에서 개최된 제2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TPP와 기존 FTA 협상 파트너 간의 관계 설정, 소기업 우선권, 규제통합 등의 이슈, 협정문의 각 장의 주제 상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는 통합 문서 및 제안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말레이시아가 공식 참여함.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부터 미국에서 개최된 제14차 협상까지 상품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통관,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통합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보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15차 협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적인 TPP 참여국으로 가입을 선언하였고, 11개의 협상국이 공산품과 농업에 대한 관세와 의류 및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시장접근 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제18차 협상에서는 일본이 가입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금의 12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의 협상내용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2013년 12월부터는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감. 당초에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목적으로 2013년 내에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며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음.
- TPP의 주도국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³의 의회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난항을 겪었으나, 2015년 6월 24일 상원·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TPP 협상이 가속화됨.
-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미국 애틀란타 각료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낙농품 개방 등에 대한 오랜 협상 끝에 TPP가 타결되었음.
 - 당초 이틀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각료회의에서 주요 참여국의 핵심 산업 분야인 농업, 낙농품, 자동차산업과 의약품 특허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지연되었음.
 - 낙농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주요 낙농품 생산국의 대립으로 타결 직전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캐나다는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로 한때 TPP 가입 포기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뉴질랜드의 개방 요구수준에 일본과 캐나다가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였음. 캐나다의 경우,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해오다가 자국의 낙농품 생산의 약 3.25%를 수입하기로 하였음.

³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한 법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연장 또는 부활되어 오다가 1994년 UR 협정 비준 이후 한동안 소멸되었다. 그러나 부시정부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을 강조하며 이 법의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 2002년 8월에 부활되었다.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시사경제용어사전).

- 농업 보호 수준이 높았던 일본의 경우,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방함으로써 5대 민감 품목을 개방하기로 하였음. 5대 민감 품목에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밀/보리가 있고, TRQ 제공과 관세 감축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표 2-1. TPP 협상과정

협상	협상시기		개최국	비고	
제1차	2010년	3월	호주	※ P4회원국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TPP 협상 개시	
제2차		6월	미국		
제3차		10월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	
제4차		12월	뉴질랜드		
제5차	2011년	2월	칠레		
제6차		3월	싱가포르		
제7차		6월	베트남		
제8차		9월	미국		
제9차		10월	페루		
제10차	2012년	12월	말레이시아		
제11차		3월	호주		
제12차		5월	미국		
제13차		7월	미국		
제14차		9월	미국		
제15차	2013년	12월	뉴질랜드	※ 캐나다, 멕시코 협상 참가(10월)	
제16차		3월	싱가포르		
제17차		5월	페루		
제18차		7월	말레이시아	※ 일본 TPP 공식 참가	
제19차		8월	브루나이		
각료회의	2014년	12월	싱가포르	※ 우리나라 정부 TPP 관심 표명	
각료회의		2월	싱가포르		
비공식		5월	베트남		
각료회의		5월	싱가포르		
비공식		7월	캐나다		
비공식		9월	베트남		
각료회의		10월	호주		
비공식		12월	미국		
비공식		2015년	1월	미국	
비공식			3월	하와이	
비공식	5월		괌		
각료회의	7월		하와이		
각료회의	9~10월		미국	※ 협상 타결	

자료: USTR. "TPP Blog."

3. 협정문 구성

- TPP 협정문의 체계는 전문(Preamble),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관련 기구(Related Instruments), 미국-일본 양자 간 협상 결과(Bilateral U.S.-Japan Outcom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문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임.
 - 부속서는 비합치조치 I, II와 금융서비스, 국영기업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관련 기구와 미·일 양자 간 협상결과에 관한 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있음.
 - ※ 2015년 11월 5일 자로 공개된 TPP 협정문은 법률을 검토 중이며, 정식 서명까지는 협정문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접근 분야는 즉시 철폐부터 30년 철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약 95~100%의 관세 자유화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규범 분야는 WTO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TPP의 규범 내용이 글로벌 규범으로 교착될 가능성이 높음.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에서는 TPP 역내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및 인하 방식과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관세철폐일정 중 대부분의 상품이 즉시 철폐이고, 일부 상품은 합의된 일정 기간에 걸쳐 철폐될 예정임.
 - 장·단기적으로 TPP 회원국 중 10개국이 10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와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각각 99.8%와 99.6%의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를 인정받음.
- 원산지 규정 및 절차(제3장)에서는 기존 FTA와 차별화된 다자간 FTA의 장

점을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 통일과 누적원산지 규정을 다루고 있음.

- TPP 12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통일로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TPP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공정에 대한 원산지 누적을 허용하여 역내 가치사슬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5장)는 주요 통관 관련 규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품 수출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절차, 투명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한 의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역구제(제6장)에서는 급격한 수입증가, 불공정한 가격의 수출품 판매, 수출국의 생산자 보조금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투명한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7장)에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도출된 과학적 근거 기반의 SPS 조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다루고 있음. SPS 조치는 각 국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TPP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SPS 조치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체도를 구축하였음.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8장)에서는 아태지역 표준제정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이해관계자 기반의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각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표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와인 및 증류주,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제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정보통신 제품 등에 대해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음.

- 정부조달(제15장)에서는 TPP 회원국 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자의 정부조달 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TPP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회원국 간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제17장)에서는 외국 국영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와 보조금 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기반으로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영기업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정부지원이 허용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제18장)에서는 위조, 침해 등을 방지하고 상표, 저작권, 특허,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TPP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타협에 난항을 겪은 신약 시판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개발자의 자료는 최소 5년, 생물의약품은 5~8년 동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24장)에서는 회원국이 중소기업에 정보전달, 서류 및 통관절차 간소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수출상담 등을 통해 TPP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이슈는 TPP 협상 개시부터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의제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복잡한 서류작업, 불투명한 규정 절차와 부패, 관세 행정의 비효율성, 인터넷 데이터 제한, 물류 서비스의 취약성과 높은 비용, 선적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편입된 내용임.

- 투명성 및 반부패(제26장)에서는 무역, 투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분쟁해결(제28장)에서는 TPP 회원국 내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해결절차: 당사국 간의 협의 → 패널 설치 → 패널 구성 →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

표 2-2. TPP 협정문 구성

장 (Chapter)	내용	장 (Chapter)	내용
전문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장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	제19장	노동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0장	환경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제21장	협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
제4장	섬유 및 의류	제22장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23장	개발
제6장	무역구제	제24장	중소기업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25장	규제통합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26장	투명성 및 반부패
제9장	투자	제27장	행정 및 제도규정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28장	분쟁해결
제11장	금융서비스	제29장	예외조항
제12장	비즈니스 목적의 일시적 입국	제30장	최종규정
제13장	전기통신	부속서 I & II	비합치 조치
제14장	전자상거래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제15장	정부조달	부속서 IV	국영기업
제16장	경쟁정책	관련 기구	
제17장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미국-일본 양자 간 협상 결과	※미국: 일본 자동차 무역 비관세 조치 ※일본: 비관세 조치 병렬 협상

제 3 장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⁴

1. 호주

- 호주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700개이며, 평균 관세율⁵은 1.5%임.
 - 01류 산 동물, 02류 육류, 06류 산수목·꽃, 09류 커피·향신료, 10류 곡물,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23류 조제사료, 24류 연초 등은 이미 관세율이 0%임.
 - 04류 낙농품,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8류 과실·견과류, 11류 밀가루·전분,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3류 식물성 추출물,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은 전체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율이 낮음.
 - 07류 채소의 평균관세율은 농산물 평균관세율과 같고,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3류 음료·주류·식초 등은 전체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⁴ 여기서는 TPP 참여국의 농산물 상품양허 결과를 국가별로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로 정의하였음. 또한 양허결과 분석은 HS 2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세부적인 세번까지 검토하였음. 국가별 순서는 각 국가의 영문자 순서임.

⁵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 세번만 반영하였음.

- 호주의 농산물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이 종가세로 단순한 구조임.
 - 종가세는 0%, 4%, 5%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 HS 0406호의 치즈 4개 세번은 종량세로 1kg당 1.22달러의 관세가 있으며, HS 2009호의 포도주스 2개 세번과 기타 감귤류 주스 2개 세번은 5%의 관세나 1kg당 0.45달러의 선택세가 있음.

- TPP에서 호주의 농산물 양허결과 또한 매우 단순한 구조임. 호주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며, 양허안도 즉시 철폐(EIF)와 4년 철폐(AU4 B) 단 2개로 단순한 구조임.
 - AU4 B는 TPP 발효 이후 3년차까지는 기준세율(Base Rate)을 유지하고 4년차에 관세를 철폐함.

- 호주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평균 관세율이 1.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많은 세번들의 관세율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전체 700개의 농산물 세번을 모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음.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699개 세번(전체 농산물 세번의 99.9%)을 즉시 철폐하였음.
 - 4년 철폐로 양허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700개 중 단 1개의 세번(2005.91.00)으로 즉순임.

표 3-1. 호주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EIF	AU4.B		
01류	산 동물	0.0	22	0	22	3.1
02류	육류	0.0	58	0	58	8.3
04류	낙농품	0.2	29	0	29	4.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3	16	0	16	2.3
06류	산수목·꽃	0.0	16	0	16	2.3
07류	채소	1.5	62	0	62	8.9
08류	과실·견과류	0.9	55	0	55	7.9
09류	커피·향신료	0.0	31	0	31	4.4
10류	곡물	0.0	16	0	16	2.3
11류	밀가루·전분	0.7	28	0	28	4.0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7	38	0	38	5.4
13류	식물성추출물	0.9	11	0	11	1.6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	5	0	5	0.7
15류	동식물성유지	2.0	46	0	46	6.6
16류	육·어류조제품	1.7	26	0	26	3.7
17류	당류·설탕과자	1.9	17	0	17	2.4
18류	코코아	2.3	11	0	11	1.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9	20	0	20	2.9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4.2	59	1	60	8.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4	18	0	18	2.6
22류	음료·주류·식초	3.4	79	0	79	11.3
23류	조제사료	0.0	23	0	23	3.3
24류	연초	0.0	13	0	13	1.9
합계 (비중)		1.5	699	1	700	
			(99.9)	(0.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2. 브루나이

- 브루나이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1,103개이며, 평균 관세율⁶은 0.02%임.
 - 21류 기타 조제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류에서는 모두 평균과세율이 0%임.
- 브루나이의 농산물 관세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이 종가세로 단순한 구조임. 일부 종량세가 존재함.
 - 종가세는 0%, 5%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5% 관세는 21류의 인스턴트커피와 차 가공품 관련 5개 세번임.
 - 종량세는 09류의 커피 원두 8개 세번과 차 8개 세번에 부과되고 있으며, 21류의 조제가공품 중 알코올 음료 세번 5개에도 부과되고 있음.
- TPP에서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결과는 단순한 구조임. 브루나이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며, 양허안은 즉시 철폐(A, BD-A)와 7년 철폐(BD7-D, BD7-E), 11년 철폐(BD11)로 크게 3개로 분류됨.
 - 즉시 철폐 중 A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BD-A 역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지만 수입허가와 수입제한은 유지됨.
 - 7년 철폐 중 BD7-D는 5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발효 6년 차에 관세가 1kg당 5센트로 감축이 되고 이후 7년차에 관세철폐가 되는 것이고, BD7-E는 발효 5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발효 6년 차에는 기준관세가 1kg당 10센트로 감축이 되고 이후 7년 차에 관세가 철폐됨.
 - BD11은 발효 10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11년 차에 관세가 철폐됨.
- 브루나이는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평균 관세율이 0.02%로 매우 낮은 편이며, 많은 세번들의 관세율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전체 1,104개의 농산물

⁶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 세번만 반영하였음.

세번을 모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음.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085개 세번(전체 농산물 세번의 98.3%)은 즉시 철폐하였음. 이 중 2개 세번(아편)은 수입허가제도와 수입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7년 철폐로 양허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14개 세번(1.4%)이며, 커피와 차 관련 세번들임.
- 11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모두 5개이며, 알코올음료 세번임.

표 3-2.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A	BD-A	BD7-D	BD7-E	BD11		
01류	산 동물	0.00	37	0	0	0	0	37	3.4
02류	육류	0.00	69	0	0	0	0	69	6.3
04류	낙농품	0.00	48	0	0	0	0	48	4.3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00	31	0	0	0	0	31	2.8
06류	산수목·꽃	0.00	26	0	0	0	0	26	2.4
07류	채소	0.00	93	0	0	0	0	93	8.4
08류	과실·견과류	0.00	73	0	0	0	0	73	6.6
09류	커피·향신료	0.00	35	0	4	10	0	49	4.4
10류	곡물	0.00	25	0	0	0	0	25	2.3
11류	밀가루·전분	0.00	41	0	0	0	0	41	3.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00	61	0	0	0	0	61	5.5
13류	식물성추출물	0.00	17	2	0	0	0	19	1.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0	9	0	0	0	0	9	0.8
15류	동식물성유지	0.00	150	0	0	0	0	150	13.6
16류	육·어류조제품	0.00	59	0	0	0	0	59	5.3
17류	당류·설탕과자	0.00	28	0	0	0	0	28	2.5
18류	코코아	0.00	23	0	0	0	0	23	2.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0.00	42	0	0	0	0	42	3.8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00	70	0	0	0	0	70	6.3
21류	기타 조제식품	0.68	37	0	0	0	5	42	3.8
22류	음료·주류·식초	0.00	56	0	0	0	0	56	5.1
23류	조제사료	0.00	31	0	0	0	0	31	2.8
24류	연초	0.00	22	0	0	0	0	22	2.0
합계 (비중)		0.02	1083 (98.1)	2 (0.2)	4 (0.4)	10 (0.9)	5 (0.5)	1104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3. 캐나다

- 캐나다의 농산물 세번은 1,328개이며, 평균관세율은 4.3%임.
 -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06류 산수목·꽃 10류 곡물,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류 연초 등이며, 특히 곡물, 육·어류조제품의 관세율이 높은 편임.
- 캐나다는 관세가 0%인 세번이 전체 세번 중 39.3%(52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밀, 보리, 소시지 관련 7개 세번은 관세율이 약 50% 이상으로 높음.
- 캐나다의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89개(74.5%)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339개 세번(25.5%)에 대해서는 종량세나 복합세를 부과하고 있음.
- TPP 협상 결과 캐나다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즉시 철폐(EIF), 6년 철폐(B6), 11년 철폐(B11) 그리고 TRQ⁷ 품목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는 발효와 동시에 기준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세번이며, 6년 철폐와 11년 철폐는 각각 6년, 11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마지막 연차에 관세가 철폐됨.
 - TRQ는 기준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유장은 기준관세를 11년에 걸쳐 균등철폐하기로 하였음.

⁷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시사상식사전).

- 캐나다는 대부분의 품목은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지만, 쇠고기 6개 세번(D)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 양허수준에 차이가 있음.
 -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에게 캐나다는 쇠고기 6개 세번을 6년 철폐하기로 하였지만, 호주에게는 11년 철폐하기로 하여 민감성을 확보하였음.

-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3.1%이며, 기준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유장을 제외한 나머지 TRQ 품목들임.⁸
 - TRQ 품목은 우유, 크림,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요구르트, 버터밀크, 유장,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 낙농품, 계란, 닭고기, 칠면조 등 낙농품과 축산물이 주를 이룸.

⁸ 캐나다의 TRQ 양허현황은 부록 참조.

표 3-3. 캐나다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6	B11	TRQ	D		
01류 산 동물	0.9	26	0	3	3	0	32	2.4
02류 육류	3.3	72	1	4	22	6	105	7.9
04류 낙농품	6.6	44	2	0	41	0	87	6.6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0	16	0	0	0	0	16	1.2
06류 산수목·꽃	4.4	27	0	0	0	0	27	2.0
07류 채소	2.4	144	0	0	0	0	144	10.8
08류 과실·견과류	1.1	90	0	0	0	0	90	6.8
09류 커피·향신료	1.0	46	0	0	0	0	46	3.5
10류 곡물	14.2	21	0	0	0	0	21	1.6
11류 밀가루·전분	3.5	43	1	16	0	0	60	4.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0	46	0	0	0	0	46	3.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0	0	10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	5	0	0	0	0	5	0.4
15류 동식물성유지	5.3	62	2	0	0	0	64	4.8
16류 육·어류조제품	16.9	58	2	7	12	0	79	5.9
17류 당류·설탕과자	5.0	15	3	22	0	0	40	3.0
18류 코코아	3.5	15	0	0	2	0	17	1.3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9	112	0	32	6	0	150	11.3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5.6	90	0	0	0	0	90	6.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6.4	34	5	1	5	0	45	3.4
22류 음료·주류·식초	1.9	95	1	0	1	0	97	7.3
23류 조제사료	1.1	40	0	0	1	0	41	3.1
24류 연초	7.1	1	0	15	0	0	16	1.2
합계 (비중)	4.3	1112 (83.7)	17 (1.3)	100 (7.5)	93 (7.0)	6 (0.5)	1328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4. 칠레

○ 칠레의 농산물 세번은 1,067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6.0%임. 대부분의 칠레 농산물 세번은 6.0%로 단순화되어 있음.

- 그러나 닭고기 절단육과 칠면조 절단육 12개 세번의 관세율은 9.3%로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임.

- 한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와 같이 이미 관세 0%인 세번은 없음.
- 칠레의 관세구조는 모두 종가세로 매우 단순한 편이며, TPP 참여국에게 공통적으로 양허결과는 즉시 철폐(EIF)와 8년철폐(B8)로 매우 단순하게 양허하였음. 그러나 회원국별로 다르게 양허한 세번이 129개로 많은 편임.
 - 즉시 철폐 세번은 90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84.6%를 차지하고 있음.
 - 8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기타),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 쌀, 시럽, 당밀 등으로 총 35개 세번임.
- 칠레가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한 품목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밀과 설탕 관련 세번들로 이들 세번은 칠레의 주요 민감품목임. 밀과 설탕 관련 세번은 칠레와 TPP 회원국 간의 기체결 FTA에서의 양허안을 따르기로 협의하였음.
 - 단, ASEAN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게는 기준관세는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자국 농업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 등에 시행 중인 가격밴드제도(Price Band System)⁹는 유지하기로 하였음.
- 두 번째는 산 닭과 칠면조,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 고래고기, 낙농품(밀크와 크림, 분유, 유장, 치즈 등), 소시지, 기타 당류, 초콜릿과 코코아를 포함한 조제식료품, 소스류 그리고 그 외 음료수와 맥주, 사료용 조제품 등은 캐나다와 미국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과 다르게 양허하였음.
 -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 분유와 유장 그리고 치즈 제품들, 소시지와 육가공품, 설탕이나 우유가 포함된 음료수, 맥주, 사

⁹ 가격밴드제도는 수입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지정된 구간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지정된 구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는 제도임.

료용 조제품 등은 MFN 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미국에게는 기타 당류(당류와 단풍당시럽, 캐러멜당, 인조꿀 등)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칠레 간의 기체결 FTA 양허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표 3-4. 칠레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6	B11			
01류	산 동물	6.0	22	0	5	27	2.5
02류	육류	6.5	53	0	24	77	7.2
04류	낙농품	6.0	2	26	31	59	5.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6.0	24	0	0	24	2.2
06류	산수목·꽃	6.0	30	0	0	30	2.8
07류	채소	6.0	87	0	0	87	8.2
08류	과실·견과류	6.0	110	0	0	110	10.3
09류	커피·향신료	6.0	33	0	0	33	3.1
10류	곡물	6.0	13	6	1	20	1.9
11류	밀가루·전분	6.0	28	0	1	29	2.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6.0	77	0	0	77	7.2
13류	식물성추출물	6.0	12	0	0	12	1.1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6.0	7	0	0	7	0.7
15류	동식물성유지	6.0	60	0	0	60	5.6
16류	육·어류조제품	6.0	90	0	10	100	9.4
17류	당류·설탕과자	6.0	6	3	20	29	2.7
18류	코코아	6.0	12	0	8	20	1.9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6.0	24	0	5	29	2.7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6.0	94	0	0	94	8.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6.0	17	0	12	29	2.7
22류	음료·주류·식초	6.0	48	0	8	56	5.2
23류	조제사료	6.0	40	0	4	44	4.1
24류	연초	6.0	14	0	0	14	1.3
	합계 (비중)	6.0	903 (84.6)	35 (3.3)	129 (12.1)	106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5. 일본

- 일본의 농산물 세번은 1,593개로 다른 국가보다 농산물 세번이 많은 편이며,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2.9%임.
 -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11류 밀가루·전분,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임. 낙농품과 밀가루·전분을 제외하면 당류와 조제품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임.
- 일본의 관세구조는 매우 복잡한 편임. 종가세 세번은 940개이며,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의 세번은 653개로 매우 많음.
 - 종가세는 0%에서부터 61.9%까지 단계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고율관세 중에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TPP 농업협상에서도 매우 복잡하게 양허하였음. 크게 분류하면 일본은 13개의 유형으로 양허를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2개의 유형으로 양허를 하였음.
 - 가령 예를 들면, 6년 철폐 내에서도 6년간 균등철폐, 첫해에 X%를 감축하고 이후에 X년간 관세를 유지한 후, X년간 균등 철폐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양허하였음.
- 일본은 전체 농산물 1,593개 세번 중 관세를 10년 이내에 조기 철폐하는 세번은 전체 68.1%를 차지하며,
 - 즉시 철폐하는 농산물은 784개로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49.2%를 차지함. 말, 소,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등과 같은 산 동물, 야생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케이싱, 장미, 카네이션, 난초 등과 같은 화훼류, 토마토, 마늘, 양배추, 배추, 당근, 오이, 완두콩, 콩, 아스파

라거스, 파프리카, 시금치, 호박, 수박, 복숭아, 자두, 딸기, 키위, 커피, 팜유, 동유, 레몬주스, 인스턴트 커피, 럼, 보드카, 담배 등이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함.

- 4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9개이며, 사탕옥수수, 단풍당, 단풍시럽 등이 이에 해당함.
 - 6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240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15.1%를 차지함. 휘핑크림, 감자, 대두, 브로콜리, 양파, 감귤, 체리, 살구(건조), 사과(건조), 감(건조), 녹차, 홍차, 해바라기씨, 마가린, 소시지, 옥수수, 죽순, 잼, 과일젤리, 간장, 마요네즈 등이 이에 해당함.
 - 8년 철폐 품목은 천연꿀, 옥수수가루, 시리얼, 스파클링 와인 등이 있음. 8년 철폐 세번은 모두 38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2.4%를 차지함.
 - 9년 철폐 품목에는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파스타, 와플, 피자 등과 같은 6개 세번(0.4%)이 있음.
 - 10년 철폐 품목은 고을관세 돼지고기 세번 8개(0.5%)임.
-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세번은 243개로 전체 농산물의 15.3%를 차지함.
- 11년 철폐는 203개 세번으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2.7%를 차지하고 있음. 11년 철폐 품목에는 닭고기(냉동 통닭, 닭다리), 요구르트(기타), 완두, 이집트콩, 강낭콩, 밤, 사과, 파인애플, 인조꿀, 유아용조제품, 빵, 페스트리(파이), 케이크, 비스킷, 기타 조제 과일 및 견과류, 과일 및 채소 주스, 커피 및 차 조제품, 토마토 케첩, 토마토 소스, 사케 등이 있음.
 - 13년 철폐 세번은 4개 세번(0.3%)으로, 소 내장 2개 세번과 계란(신선, 건조) 2개 세번이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34개 세번(2.1%)으로, 소(물소), 돼지(50kg 이상), 소내장(간장), 쇠고기 식용설육, 치즈(신선, 가루치즈, 기타 치즈), 기타 조제 저장육 등이 이에 해당함.
 - 21년 철폐 세번은 2개 세번(0.1%)이며, 사료용유장(배합사료), 조제 식용지방이 이에 해당함.

- 계절관세(S) 세번은 오렌지 1개 세번(0.1%)이며, 4.1~11.30 기간의 관세는 16% 관세는 6년 철폐하고 12. 1.~3. 31. 기간의 32% 관세는 8년 철폐¹⁰하기로 하였음. 또한 12. 1.~3. 31. 기간에는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시킬 수 있음.
- 관세를 부분 감축하는 세번도 있음. 부분감축하는 세번은 99개 세번으로 전체 농산물의 6.2%를 차지함.
 - 관세를 부분감축하는 품목은 쇠고기(38.5→9.0%), 돼지고기(약 80% 감축), 밀크와 크림(약 70% 감축), 요구르트(기타)(70% 감축), 유장(기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에 사용되는 것)(72% 감축),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을 이용한 것)(75% 감축, 쌀가루 조제품은 15~25% 감축), 스파게티(60% 감축), 마카로니(60% 감축), 아이스크림(63~67% 감축) 등이 이에 해당함.
- TRQ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TRQ(33개 항목)가 있는 반면, 특정 국가에게만 제공되는 TRQ(25개 항목)가 있음.¹¹
 - 모든 TPP 회원국에게 양허되는 TRQ 품목은 밀, 밀 가공품과 밀을 기저로 하는 조제식품, 면류(우동, 소바), 베이커리조제식품, 빵가루, 보리, 천연치즈(체더치즈원료), 버터, 탈지분유, 분유, 코코아조제품, 식용기름(지방과 식용유), 연유, 껌, 설탕과자, 커피, 차류, 콩류의 조제식료품, 캔디, 초콜릿, 설탕, 전분 등임.
 - 특정 국가에게만 양허되는 TRQ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쌀(미국, 호주),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미국), 밀(미국, 호주, 캐나다), 맥아(미국, 호주, 캐나다), 가공치즈(미국, 호주,

¹⁰ 첫 해에 기준관세의 20%를 감축하고, 3년차까지는 1년차의 관세가 유지됨. 이후 4년차부터 5년 균등 감축을 하여 8년차에 관세가 감축됨.

¹¹ 품목별 TRQ는 부록을 참조.

뉴질랜드), 유장(미국, 호주, 뉴질랜드), 포도당과 과당(미국), 옥수수과
감자전분(미국), 이눌린(미국, 칠레)

-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세번은 50개 세번으로 전체 세번 중 3.1%를 차지함. 이들 품목은 04류 낙농품(9개), 10류 곡물(9개), 11류 밀가루·전분(10개), 17류 당류·설탕과자(9개),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12개), 21류 기타 조제식료품(1개) 등으로 주로 일본의 주요 민감품목에 해당함. 다른 TPP 회원국에 비해 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 추가인 관세혜택이나 TRQ 할당을 더 하였음.

- 낙농품 품목 중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품목은 유장 및 변성유장과 가공치즈 등이 이에 해당함. 유장 및 변성유장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추가적인 TRQ¹²를 제공하였음. 가공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곡물 품목 중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품목은 듀럼밀, 옥수수(기타), 쌀, 기타 곡물(기타) 등임. 듀럼밀은 호주, 캐나다, 미국에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였음. 옥수수(기타)는 TPP 모든 회원에게는 In-Quota 세율을 즉시 철폐하였지만, 페루에는 Out-Quota 세율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쌀은 호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TPP 회원국에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기타 곡물(기타)은 호주, 캐나다, 미국에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밀가루·전분 중에는 쌀가루 조제품과 맥아(기타), 전분(옥수수, 감자)과 이눌린이 이에 해당함. 쌀가루 조제품은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맥아(기타)는 호주, 캐나다, 미국에 TRQ를 제공하고 나머지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전분(옥수수, 감자)은 TPP 회원국에게 TRQ를 제공하였지만, 미국에는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눌린은

¹² 국별 TRQ 규모와 해당 세번은 부록 참조.

칠레와 미국에 TRQ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 당류·설탕과자 중에는 포도당 및 포도당시럽(기타, 설탕(당류)를 더한 것)과 기타 과당 및 과당수(기타, 설탕(당류)를 더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 맥아당은 부분 감축(기준관세의 60%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에는 기준관세를 11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그 외 세번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곡물·곡분의 조제품에는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 함유),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밀가루 조제품), 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시키고 또는 볶아서 만든 조제식료품(쌀 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이들 품목 중 쌀이 포함된 제품은 다른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밀가루 조제품의 경우에는 TPP 회원국에는 TRQ를 제공하였지만, 호주와 미국에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기타 조제식료품은 쌀이 포함된 조제식료품(기타)이 이에 해당하며, 다른 쌀 관련 세번과 같이 TPP 회원국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표 3-5. 일본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4	6	8	9	10	11	13	16	21	S	P	TRQ	D				
01류 산 동물	0.4	46	0	0	0	0	0	0	0	0	6	0	0	0	0	0	0	52	3.3
02류 육류	10.4	48	0	3	1	0	8	16	2	5	0	0	30	0	0	113	7.1		
04류 낙농품	26.4	3	0	5	1	0	0	7	2	4	1	0	17	23	9	72	4.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3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2.1		
06류 산수목·꽃	0.4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3		
07류 채소	5.9	87	1	15	0	0	0	9	0	0	0	0	2	0	0	114	7.2		
08류 과일·견과류	7.8	69	0	14	0	0	0	10	0	0	0	1	0	0	0	94	5.9		
09류 커피·향신료	3.4	65	0	7	0	0	0	0	0	0	0	0	0	0	0	72	4.5		
10류 곡물	2.4	19	0	1	0	0	0	0	0	0	0	0	0	1	9	30	1.9		
11류 밀가루·전분	19.5	4	0	16	3	0	0	6	0	0	0	0	0	19	10	58	3.6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0	61	0	0	2	0	0	0	0	0	0	0	8	0	0	71	4.5		
13류 식물성추출물	2.9	19	0	1	1	0	0	0	0	0	0	0	0	0	0	21	1.3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3.1	15	0	1	0	0	0	0	0	0	0	0	0	0	0	16	1.0		
15류 동식물성유지	3.8	51	2	22	1	1	0	9	0	0	0	0	0	0	0	86	5.4		
16류 육·어류조제품	13.2	46	0	9	0	0	0	25	0	19	0	0	0	0	0	99	6.2		
17류 당류·설탕과자	16.3	9	2	2	0	0	0	11	0	0	0	0	0	15	9	48	3.0		
18류 코코아	57.4	5	0	3	1	0	0	4	0	0	0	0	2	12	0	27	1.7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3	2	0	8	4	5	0	33	0	0	0	0	22	26	12	112	7.0		
20류 채소·과일의 조제품	22.6	77	1	108	18	0	0	45	0	0	0	0	2	3	0	254	15.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7.7	24	1	17	1	0	0	14	0	0	1	0	16	16	1	91	5.7		
22류 음료·주류·식초	5.3	34	2	5	5	0	0	10	0	0	0	0	0	0	0	56	3.5		
23류 조제사료	0.5	39	0	3	0	0	0	0	0	0	0	0	0	0	0	42	2.6		
24류 연초	5.1	7	0	0	0	0	0	4	0	0	0	0	0	0	0	11	0.7		
합계 (비중)	12.9	784 (49.2)	9 (0.6)	240 (15.1)	38 (2.4)	6 (0.4)	8 (0.5)	203 (12.7)	4 (0.3)	34 (2.1)	2 (0.1)	1 (0.1)	99 (6.2)	115 (7.2)	50 (3.1)	1593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6.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세번은 1,166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2.1%로 낮은 편임. 그러나 08류 과일·견과류, 10류 곡물, 18류 코코아,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는 관세가 높은 품목류임. 24류 연초는 종가세는 없고

종량세와 복합세로 이루어져 있음.

- 이미 0% 관세율인 세번은 모두 832개로 전체의 71.4%임.

○ 관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종량세나 복합세 세번이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7.9%(334개)를 차지함.

- 종량세나 복합세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돼지와 가금류(산 동물), 돼지고기(도체나 이분도체), 닭고기, 밀크와 크림(액상우유), 조란, 양배추,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멜론, 람부탄, 랑사트¹³, 잭푸르트, 사포딜라 나무열매(cikus)) 등과 같은 농산물과 맥주, 포도주, 사케, 기타 발효주, 브랜디, 위스키, 럼 등과 같은 주류, 담배 등이 있음.
- 종가세 세번은 832개이며,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1.4%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의 TPP 농산물 양허안은 즉시 철폐(A), 11년 철폐(B11), 16년 철폐(B16), TRQ(TRQ, TRQ+B16)¹⁴ 등으로 단순한 편입.

- 즉시 철폐는 총 1,068개 세번으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1.6%를 차지함.
- 11년 철폐는 30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2.6%를 차지함. 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수박, 멜론, 두리안, 람부탄, 랑사트, 잭푸르트, 사포딜라 나무 열매, 스타프루트와 같은 과일과 쌀이 11년 철폐 품목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총 5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4.5%를 차지함. 16년 철폐 품목에는 맥주, 포도주, 사케, 기타 발효주, 브랜디, 위스키, 럼 등과 같은 주류와 담배가 있음.
- TRQ 세번은 모두 15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3%를 차지하고 있음.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 중 산 닭, 닭고기, 조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

¹³ 랑사트(langsat)란 동인도 제도에서 나는 멀구슬나무과의 작은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며 노르스름하고 시큼함(YBM All in English-Korean 사전).

¹⁴ 각 품목별 TRQ 내용은 부록 참조.

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돼지고기(도체나 이분도체), 밀크와 크림(액상우유)은 TRQ도 제공하고 Out-Quota 관세율은 16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표 3-6.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A	B11	B16	TRQ B16	TRQ			
01류	산 동물	0.0	42	0	0	0	2	44	3.8
02류	육류	0.0	58	0	0	2	4	64	5.5
04류	낙농품	0.4	53	0	0	3	4	60	5.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0	16	0	0	0	0	16	1.4
06류	산수목·꽃	0.0	20	0	0	0	0	20	1.7
07류	채소	0.7	80	0	0	0	0	80	6.9
08류	과실·견과류	5.4	69	22	0	0	0	91	7.8
09류	커피·향신료	0.3	37	0	0	0	0	37	3.2
10류	곡물	14.0	13	8	0	0	0	21	1.8
11류	밀가루·전분	0.1	35	0	0	0	0	35	3.0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3	52	0	0	0	0	52	4.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0	0	10	0.9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	8	0	0	0	0	8	0.7
15류	동식물성유지	2.5	166	0	0	0	0	166	14.2
16류	육·어류조제품	2.1	77	0	0	0	0	77	6.6
17류	당류·설탕과자	1.6	31	0	0	0	0	31	2.7
18류	코코아	10.8	13	0	0	0	0	13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5	52	0	0	0	0	52	4.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0	166	0	0	0	0	166	14.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2	34	0	0	0	0	34	2.9
22류	음료·주류·식초	12.9	7	0	34	0	0	41	3.5
23류	조제사료	0.0	29	0	0	0	0	29	2.5
24류	연초	-	0	0	19	0	0	19	1.6
	합계 (비중)	2.1	1068 (91.6)	30 (2.6)	53 (4.5)	5 (0.4)	10 (0.9)	1166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7. 멕시코

- 멕시코의 농산물 세번은 1,093개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2.8%임.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은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17류 당류·설탕과자,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류 연초 등임.
- 멕시코의 관세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농산물 세번의 94.4%인 1,032개 세번은 종가세이고 55개(5.0%) 세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임. 마약류 관련(아편, 마리화나) 6개 세번은 금지 품목임.
 - 멕시코 농산물 중 종가세는 0~254%까지 다양한 편이며, MFN 관세가 0%인 세번의 수는 144개임.
 - 종량세 또는 복합세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은 분유(기타), 농축우유, 데어리스프레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 사탕수수당, 설탕과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맥아추출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잼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등이 있음.
- 멕시코는 TPP 회원국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농산물을 양허하였음. 멕시코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5.2%를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세번은 부분감축을하기로 하였고 TPP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EIF) 세번은 832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6.1%를 차지함.
 - 5년 철폐(B5) 세번은 31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2.8%를 차지함. 5년 철폐 품목에는 칠면조고기(절단하지 않은 것, 신선), 가금류(절단육, 기타), 버섯, 기타 냉동과일, 보리,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식물성유지, 옥수수유, 파스타,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밀기울과 미강, 시가 등이 있음.
 - 8년 철폐(B8) 세번은 모두 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0.5%를 차지하며,

양고기가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B10) 세번은 99개로 농산물 세번의 9.1%를 차지함. 쇠고기, 닭고기, 요구르트, 아스파라거스, 고추, 마늘, 구아버, 오렌지, 자몽, 포도, 수박, 참외, 파파야, 옥수수, 쌀, 감자전분, 해바라기씨, 사탕수수, 돼지기름, 땅콩기름, 참기름, 유당, 양파(초절입), 딸기(기타조제), 조제사료(면실, 아마인, 해바라기씨, 야자 등), 잎담배 등이 10년 철폐 품목에 해당함.
 - 11년 철폐(B11)와 12년 철폐(B12)는 각각 1개의 세번으로 사과와 새우(조제저장처리)¹⁵가 이에 해당함.
 - 15년 철폐(B15) 세번은 모두 47개로 전체 농산물의 4.3%를 차지함. 15년 철폐 품목에는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첨가), 유장, 감자, 양파, 강낭콩,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복숭아, 냉동딸기, 건조사과, 포도당과 포도당시럽, 과당과 과당시럽, 감자(기타조제), 브랜드리류 등이 있음.
 - 16년 철폐(B16)는 총 15개 세번(1.4%)이 있으며, 바나나, 커피원두(Robust variety), 파인애플(기타조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함.
 - 기준관세를 부분감축(P)하는 세번은 총 10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0.9%임. 커피원두(기준관세의 50% 감축), 커피조제품(기준관세의 70% 감축)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함.
-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세번(D)은 43개(3.9%)로 04류 낙농품(25개), 15류 동식물성 유지(3개), 17류 당류·설탕과자(11개),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3), 21류 기타 조제식료품(1개) 등이 이에 해당함.
- 04류 낙농품 중 밀크와 크림(무가당), 분유, 유장기타,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 치즈 등과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세번 중 낙농품(조제가공품)은 칠레, 페루,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TRQ¹⁶

¹⁵ 새우는 농산물이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국가마다 HS 코드가 상이하여 농산물 세번을 정확히 분리하기 어려움)를 위하여 농산물을 03류를 제외한 01~24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었음.

- 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칠레, 페루, 미국 등에게는 현행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15류 동식물성 유지(팜유)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TPP 회원국에게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게는 TRQ를 제공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기로 하였음.
 - 17류 당류·설탕과자는 모두 설탕 관련 세번들이며,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중 1개 세번과 21류 기타 조제식료품의 1개 세번도 설탕관련 세번임. 이들 설탕 관련 세번에 대하여 멕시코는 호주를 제외한 TPP 회원국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호주에게는 WTO TRQ 중 7%를 호주에게 할당하기로 하였음. 또한 호주에게는 할당된 In-Quota 관세율은 0%를 적용하기로 했음.
- 한편, 품종(부위)이나 수입가격에 따라 구분하여 양허를 한 경우도 있음. 이에 해당하는 세번은 모두 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0.7%를 차지함.
- 예를 들어, 쇠고기 식용설육(기타)(0206.29.99) 중 치마살은 15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그 외 부위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와인의 경우 상품가격이 1리터당 5달러 이하인 것은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그 외의 것은 3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표 3-7.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5	B8	B10	B11	B12	B15	B16	P	D	DD		
01류 산 동물	13.7	53	0	0	0	0	0	2	0	0	0	0	55	5.0
02류 육류	78.0	60	2	6	10	0	0	0	0	0	0	1	79	7.2
04류 낙농품	35.9	16	0	0	4	0	0	6	0	0	25	0	51	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9.3	30	0	0	0	0	0	0	0	0	0	0	30	2.7
06류 산수목·꽃	10.3	70	0	0	0	0	0	0	0	0	0	0	70	6.4
07류 채소	18.7	61	4	0	9	0	0	15	0	0	0	0	89	8.1
08류 과일·견과류	19.4	55	2	0	9	1	0	6	1	0	0	0	74	6.8
09류 커피·향신료	22.6	27	0	0	2	0	0	0	1	6	0	0	36	3.3
10류 곡물	22.2	19	2	0	5	0	0	0	0	0	0	0	26	2.4
11류 밀가루·전분	20.7	32	2	0	3	0	0	0	0	0	0	0	37	3.4
12류 채유용종자·인삼	4.7	87	0	0	3	0	0	0	0	0	0	0	90	8.2
13류 식물성추출물	10.7	37	0	0	0	0	0	0	0	0	0	0	37	3.4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8.9	9	0	0	0	0	0	0	0	0	0	0	9	0.8
15류 동물성성유지	15.5	49	2	0	15	0	0	0	0	0	3	0	69	6.3
16류 육·어류조제품	19.3	19	4	0	6	0	1	1	12	0	0	1	44	4.0
17류 당류·설탕과자	90.9	3	0	0	3	0	0	11	0	0	11	0	28	2.6
18류 코코아	16.0	11	0	0	1	0	0	0	0	0	0	0	12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5.4	18	5	0	4	0	0	0	0	0	3	0	30	2.7
20류 채소·과일의 조제품	20.0	68	2	0	10	0	0	4	1	0	0	0	85	7.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9.4	32	0	0	1	0	0	0	0	4	1	0	38	3.5
22류 음료·주류·식초	18.7	42	0	0	1	0	0	2	0	0	0	6	51	4.7
23류 조제사료	10.8	22	5	0	12	0	0	0	0	0	0	0	39	3.6
24류 연초	47.9	12	1	0	1	0	0	0	0	0	0	0	14	1.3
합계 (비중)	22.8	832 (76.1)	31 (2.8)	6 (0.5)	99 (9.1)	1 (0.1)	1 (0.1)	47 (4.3)	15 (1.4)	10 (0.9)	43 (3.9)	8 (0.7)	1093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8.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임. 뉴질랜드의 농산물 세번은 974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1.9%로 매우 낮은 편임.
 -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가 높은 품목류는 02류 육류, 09류 커피·향신료, 11류 밀가루·전분,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 뉴질랜드의 관세 구조는 매우 단순한 편이며 농산물 세번의 대부분이 종가세임. 특히 전체 농산물 세번 중 61.6%(600개)는 이미 관세가 0%이며, 370개 세번(38.0%)은 관세율이 5%임. 그 외 주류 관련 4개(진 및 제네바(기타), 보드카(기타)) 세번은 1리터당 50센트의 종량세가 있음.
- 뉴질랜드는 TPP 회원국에게 매우 단순한 형태로 양허하였음. 뉴질랜드의 양허 유형은 즉시 철폐(EIF), 2년 철폐(B2), 5년 철폐(B5) 등 세 가지임.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61개 세번은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8.7%를 차지함.
 - 2년 철폐 세번은 모두 3개 세번으로 야생돼지고기(기타), 비스킷(기타), 밀폐용기에 있는 조제된 고양이 또는 개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체 농산물 세번의 0.3%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10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중 1.0%를 차지함. 5년 철폐에는 육두구, 야자유(기타), 마가린, 껌,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기타), 파스타(기타 식품 재료와 결합한 것), 간장, 기타 소스류, 알코올을 포함하는 빙과류 혼합물(기타) 등의 품목이 있음.

표 3-8.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2	B5		
01류 산 동물	0.0	22	0	0	22	2.3
02류 육류	2.2	62	1	0	63	6.5
04류 낙농품	1.2	34	0	0	34	3.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0	15	0	0	15	1.5
06류 산수목·꽃	0.8	19	0	0	19	2.0
07류 채소	1.0	69	0	0	69	7.1
08류 과실·견과류	0.6	61	0	0	61	6.3
09류 커피·향신료	2.1	46	0	1	47	4.8
10류 곡물	0.0	16	0	0	16	1.6
11류 밀가루·전분	3.4	34	0	0	34	3.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3	39	0	0	39	4.0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10	1.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	5	0	0	5	0.5
15류 동식물성유지	1.1	56	0	2	58	6.0
16류 육·어류조제품	1.9	70	0	0	70	7.2
17류 당류·설탕과자	1.8	17	0	2	19	2.0
18류 코코아	2.3	10	0	1	11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4.6	26	1	1	28	2.9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4.3	129	0	0	129	13.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3.2	49	0	3	52	5.3
22류 음료·주류·식초	1.3	123	0	0	123	12.6
23류 조제사료	1.5	26	1	0	27	2.8
24류 연초	1.5	23	0	0	23	2.4
합계 (비중)	1.9	961 (98.7)	3 (0.3)	10 (1.0)	974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9. 페루

- 페루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919개이며,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6.2%임.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는 02류 육류, 08류 과실·견과류, 09류 커피·향신료, 11류 밀가루·전분, 14류 기타 식품성생산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 페루의 관세구조는 단순한 편임. 919개 농산물 세번이 모두 종가세이며, 관세도 0%, 9%, 17%로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세번은 칠레와 같이 가격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가격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세번은 모두 46개로 전체 농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가격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품목은 밀크와 크림(지방함량 6% 이하의 것, 무가당), 밀크와 크림(가당), 유장(기타), 버터, 버터(기타), 가공치즈와 기타 치즈, 옥수수, 쌀, 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사탕수수 당(기타), 사탕무, 포도당시럽, 과당, 인조꿀, 캐러멜 당, 기타 당, 젤리 또는 캐러멜 당, 기타 조제식료품(유아용), 사료용조제품(기타) 등임.
- TPP에서 페루의 농산물 양허안은 즉시 철폐(EIF), 6년 철폐(B6), 11년 철폐(B11), 13년 철폐(B13), 16년 철폐(B16)으로 단순한 편임.
 - 즉시 철폐 세번은 775개로 전체 농산물 중 84.3%를 차지하고 있음.
 - 6년 철폐 세번은 80개로 전체 농산물 중 8.7%를 차지하고 있음. 6년 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은 돼지고기(냉동, 이분도체, 기타), 신선치즈, 가루치즈, 블루바인치즈, 양파, 아스파라거스(냉동), 양파(건조), 카나리아(건조), 리마콩(건조), 기타 콩(건조), 오렌지, 만다린, 탄젤로¹⁷, 레몬,

¹⁷ 꾀과 자몽을 교배한 과일.

라임, 사과, 딸기, 보리, 기타 가공곡물(옥수수, 보리),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돼지기름, 가금류 기름, 껌, 코코아 페이스트, 맥아추출물, 설탕으로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파인애플 잼과 푸레, 기타 과일 잼과 푸레, 감귤류(기타조제저장처리), 과실주스(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등, 기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포도주, 위스키, 리큐어 등이 있음.

- 11년 철폐 세번은 41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4.5%를 차지함. 11년 철폐 품목에는 쇠고기, 무당연유, 농축우유, 유장, 커피(볶지 않은 것), 카사바 전분, 기타 전분, 팜유, 야자유, 초콜릿·캔디류,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감자(조제저장처리), 완두콩(조제저장처리), 감귤주스, 푸딩 등이 있음.
- 13년 철폐 세번은 2개(0.2%)이며, 닭고기(절단육, 냉장)가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21개(2.3%)이며, 닭고기(통닭), 닭고기(절단육, 냉동), 베이컨, 햄, 돼지고기 설육, 쇠고기 설육, 바나나, 옥수수가루, 코코아를 포함하는 아이스크림(기타), 변성에틸알코올 등의 품목이 있음.

표 3-9. 페루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6	B11	B13	B16		
01류 산 동물	4.5	32	0	0	0	0	32	3.5
02류 육류	9.2	43	2	7	2	13	67	7.3
04류 낙농품	3.6	39	3	5	0	0	47	5.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5.6	24	0	0	0	0	24	2.6
06류 산수목·꽃	5.6	24	0	0	0	0	24	2.6
07류 채소	5.8	70	11	0	0	1	82	8.9
08류 과일·견과류	10.6	71	10	0	0	1	82	8.9
09류 커피·향신료	8.6	37	0	1	0	0	38	4.1
10류 곡물	4.7	35	1	0	0	0	36	3.9
11류 밀가루·전분	7.0	23	5	3	0	1	32	3.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7	64	0	0	0	0	64	7.0
13류 식물성추출물	5.5	13	0	5	0	0	18	2.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7.9	8	0	0	0	0	8	0.9
15류 동식물성유지	3.9	58	3	3	0	0	64	7.0
16류 육·어류조제품	4.5	35	5	0	0	0	40	4.4
17류 당류·설탕과자	6.8	24	2	2	0	0	28	3.0
18류 코코아	9.4	10	1	7	0	0	18	2.0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5	22	2	0	0	0	24	2.6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9.3	49	17	7	0	0	73	7.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9	33	2	1	0	1	37	4.0
22류 음료·주류·식초	8.5	17	16	0	0	4	37	4.0
23류 조제사료	0.0	32	0	0	0	0	32	3.5
24류 연초	9.0	12	0	0	0	0	12	1.3
합계 (비중)	6.2	775 (84.3)	80 (8.7)	41 (4.5)	2 (0.2)	21 (2.3)	919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0.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농산물 세번은 1,112개이며, 이 중 1,106개의 세번은 종가세이고 나머지 6개 세번은 종량세임. 종가세의 모든 세번이 0%의 관세율이므로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0%임.
 - 맥주(2개)와 삼수(Samsu)¹⁸(4개) 세번은 종량세가 부과됨. 맥주는 1리터당 16싱가포르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고 삼수는 1리터당 8싱가포르 달러가 부과됨.
- 싱가포르는 TPP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였음.

¹⁸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술의 일종.

표 3-10. 싱가포르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01류	산 동물	0.0	37	37	3.3
02류	육류	0.0	69	69	6.2
04류	낙농품	0.0	48	48	4.3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0	31	31	2.8
06류	산수목·꽃	0.0	26	26	2.3
07류	채소	0.0	93	93	8.4
08류	과실·견과류	0.0	73	73	6.6
09류	커피·향신료	0.0	49	49	4.4
10류	곡물	0.0	25	25	2.2
11류	밀가루·전분	0.0	38	38	3.4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0	61	61	5.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9	19	1.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0.0	7	7	0.6
15류	동식물성유지	0.0	150	150	13.5
16류	육·어류조제품	0.0	59	59	5.3
17류	당류·설탕과자	0.0	28	28	2.5
18류	코코아	0.0	16	16	1.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0.0	45	45	4.0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0	73	73	6.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0.0	44	44	4.0
22류	음료·주류·식초	0.0	59	59	5.3
23류	조제사료	0.0	33	33	3.0
24류	연초	0.0	29	29	2.6
합계 (비중)		0.0	1112	1112	
			(100.0)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 미국

- 미국의 농산물 세번은 1,707개로 TPP 회원국 중 농산물 세번이 가장 많음. 미국의 관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음. 전체 1,707개 농산물 세번 중 종가세 세번은 982개(57.5%)이며, 종량세나 복합세를 부과하는 세번은 725개임.
 - 종가세는 0~350%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종량세나 복합세 등은 261가지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현재 관세가 0%인 세번은 33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종가세 기준 미국은 평균 농산물 관세율은 9.1%이며,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12류 채유용종자·인삼,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4류 연초 등이 있음.
 - 특히 24류 연초의 평균 관세율이 90.7%로 매우 높은 편임.
- 미국은 TPP 협상에서도 회원국에게 매우 복잡한 형태로 상품 양허를 하였음. 미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30개(42.8%) 세번은 즉시 철폐(EIF)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977개(57.2%) 세번은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양허를 하였음.
 -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양허한 품목류는 주로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07류 채소, 08류 과실·견과류,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표 3-11.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D		
01류 산 동물	1.1	26	1	27	1.6
02류 육류	6.1	56	43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38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1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9	30	1.8
07류 채소	9.0	83	84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78	41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48	2.8
10류 곡물	2.2	15	6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29	9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5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2	1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34	33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3	46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58	66	3.9
18류 코코아	5.8	11	67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15	5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61	123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12	77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39	34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7	8	35	2.1
24류 연초	90.7	20	36	56	3.3
합계 (비중)	9.1	730 (42.8)	977 (57.2)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 미국은 TPP 회원국 각각에게 양허를 달리함으로써 자국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낙농품과 설탕류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 강국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게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였음.

11.1. 對 호주 양허결과

- 미국은 호주에게는 즉시 철폐(EIF), 2022년까지 철폐(US13), 미·호주 FTA 양허안 준수(US2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42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83.5%를 차지함.
 - 2022년까지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44개(2.6%)이며, 쇠고기, 고다치즈, 건양파, 건마늘, 아보카도, 토마토(조제저장처리), 피넛버터, 땅콩(기타조제처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소스, 담배 등임.
 - 미·호주 FTA를 준수(72개, 4.2%)하기로 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유장, 치즈(기타, 로퀴포트치즈 등), 아스파라거스, 버섯, 대추, 자몽, 땅콩유, 사탕수수당, 포도당, 복숭아잼, 오렌지주스(냉동), 초콜릿 우유 등임.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65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7%를 차지함. 원당, 정제당, 크림과 아이스크림, 농축우유, 버터, 분유, 기타 낙농품, 치즈(미국타입, 체다, 스위스 타입, 유럽타입)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2. 미국의 對 호주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US13	US20	TRQ		
01류 산 동물	1.1	26	0	1	0	27	1.6
02류 육류	6.1	93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50	1	23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1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59	3	5	0	167	9.8
08류 과일·견과류	5.4	114	1	4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7	0	1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2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4	0	2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41	0	9	16	66	3.9
18류 코코아	5.8	45	0	1	3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0	1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55	15	14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3	1	4	21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66	0	6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2	35	2.1
24류 연초	90.7	39	15	2	0	56	3.3
합계 (비중)	9.1	1426 (83.5)	44 (2.6)	72 (4.2)	165 (9.7)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2. 對 브루나이 양허결과

- 미국은 브루나이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로 단 순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77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2.4%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40개(2.3%)이며, 녹차, 와인 등이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90개(5.3%)이며, 땅콩, 원당, 정제당, 코코아분, 유아용 조제식료품, 럼주, 담배 등이 해당함.

표 3-13. 미국의 對 브루나이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US13	US20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1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8	26	5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0	0	16	66	3.9
18류	코코아	5.8	62	0	16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67	0	3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0	3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82	0	7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60	11	2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초	90.7	20	0	36	56	3.3
합계 (비중)		9.1	1577 (92.4)	40 (2.3)	90 (5.3)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3. 對 캐나다 양허결과

- 미국은 캐나다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37개로 전체 농산물의 90.0%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1개(0.1%)이며, 땅콩버터가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4개(0.2%)이며, 땅콩과 조제땅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한 세번은 165개(9.7%)이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요구르트(건조), 사우어크림, 유장, 우유가공품, 농축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버터와 버터 대체품, 기타 낙농품, 설탕, 설탕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4. 미국의 對 캐나다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74	0	0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1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6	0	0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0	0	0	16	66	3.9
18류	코코아	5.8	46	0	0	3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0	1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1	2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8	0	0	21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72	0	0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2	35	2.1
24류	연초	90.7	56	0	0	0	56	3.3
합계 (비중)		9.1	1537 (90.0)	1 (0.1)	4 (0.2)	165 (9.7)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4. 對 칠레 양허결과

○ 미국은 칠레에는 즉시 철폐(EIF),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66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97.2%를 차지함.
- 10년 철폐 세번은 19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1.1%를 차지하며, 코코아 분, 도넛·케이크 믹스, 혼합시럽 등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28개(1.6%)이며, 설탕과 10년 철폐 외의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표 3-15. 미국의 對 칠레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5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1	0	15	66	3.9
18류	코코아	5.8	66	8	4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64	2	4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4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75	9	5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73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초	90.7	56	0	0	56	3.3
합계		9.1	1660	19	28	1707	
(비중)			(97.2)	(1.1)	(1.6)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5. 對 일본 양허결과

- 미국은 일본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15년 철폐(B15), 20년 철폐(B20), TRQ 제공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81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47.9%를 차지함. 또한 5년 철폐 세번은 287개(16.8%)이고 10년 철폐 세번은 465개(16.8%)로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세번의 비중은 모두 92.0%임.
 - 15년 철폐 세번은 63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3.7%를 차지함.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분유, 농축크림, 유장, 치즈, 코코아분, 유아용조제식료품, 배, 복숭아, 살구 등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 20년 철폐(50개, 2.9%)에 해당하는 품목은 농축우유, 사우어크림, 치즈(미국타입, 스위스타입, 유럽타입 등), 초콜릿, 아이스크림, 버터 대용품 등이 있음.
 - TRQ(24개, 1.4%)를 제공하기로 한 품목은 쇠고기, 설탕과 설탕가공품 등이 있음.

표 3-16. 미국의 對 일본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5	B10	B15	B2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61	18	14	0	0	6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2	141	42	33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1	0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94	47	26	0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83	23	13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16	4	0	1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2	6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0	5	0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2	1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43	18	6	0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1	32	6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1	41	0	1	15	66	3.9
18류	코코아	5.8	11	9	41	8	7	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21	10	33	5	1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72	65	41	6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품	7.8	14	20	48	1	5	1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55	5	12	0	1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8	3	2	0	2	0	35	2.1
24류	연초	90.7	20	0	36	0	0	0	56	3.3
합계 (비중)		9.1	818 (47.9)	287 (16.8)	465 (27.2)	63 (3.7)	50 (2.9)	24 (1.4)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6. 對 말레이시아 양허결과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그리고 TRQ의 형태로 농산물을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453로 전체 농산물의 85.1%를 차지함. 5년 철폐 세번은 98개(5.7%)이고 10년 철폐 세번은 138개(8.1%)로 전체 농산물 중

98.9%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10년 철폐하는 품목은 버섯, 마늘(건조), 양파(건조), 땅콩, 쌀, 사탕수수당, 포도당, 와인, 럼, 담배 등이 있음.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8개(1.1%)이며, 설탕과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표 3-17. 미국의 對 말레이시아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0	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46	15	6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4	4	1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16	4	1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1	0	4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0	3	4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8	26	5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22	0	29	15	66	3.9
18류	코코아	5.8	52	6	18	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4	8	8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74	3	7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71	4	13	1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52	15	6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2	0	0	35	2.1
24류	연초	90.7	20	0	36	0	56	3.3
합계 (비중)		9.1	1453 (85.1)	98 (5.7)	138 (8.1)	18 (1.1)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7. 對 멕시코 양허결과

- 미국은 멕시코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로 단순하게 양허하였음. 따라서 멕시코에게는 모든 농산물 세번을 10년 이내에 철폐하게 됨.
 - 즉시 철폐 세번은 1,703개로 전체 농산물의 99.8%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2개(0.1%)와 10년 철폐 2개(0.1%) 세번은 수산물 관련 세번으로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은 모두 즉시 철폐하였음.

표 3-18. 미국의 對 멕시코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5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5	2	2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66	0	0	66	3.9
18류	코코아	5.8	78	0	0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70	0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4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품	7.8	89	0	0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73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초	90.7	56	0	0	56	3.3
합계 (비중)		9.1	1703 (99.8)	2 (0.1)	2 (0.1)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8. 對 뉴질랜드 양허결과

- 미국은 뉴질랜드에게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277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74.8%를 차지함.
 - 3년 철폐 세번은 1개(0.1%)이며, 와인(4리터 이하, 14도 이하,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것)이 이에 해당함.
 - 5년 철폐 세번은 108개(6.3%), 10년 철폐 세번은 207개(12.1%)로 전체 농산물 중 93.4%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한편, 10년 철폐 세번 중 아이스크림은 첫해에 기준관세의 50%가 감축되고 발효 2년 차부터 남은 관세가 9년간 균등철폐됨.
 - TRQ를 제공하는 세번은 모두 11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6.6%를 차지하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우유, 크림, 버터와 버터대용품, 유기농버터, 기타 낙농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9. 미국의 對 뉴질랜드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3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0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69	0	4	1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0	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36	0	15	16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1	0	6	2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1	0	0	4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2	0	2	2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7	0	27	5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22	0	1	42	1	66	3.9
18류 코코아	5.8	31	0	2	25	20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43	0	4	18	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32	0	31	21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50	0	1	32	6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59	1	8	4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0	2	35	2.1
24류 연초	90.7	20	0	0	36	0	56	3.3
합계 (비중)	9.1	1277 (74.8)	1 (0.1)	108 (6.3)	208 (12.2)	113 (6.6)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9. 對 페루 양허결과

- 미국은 페루에게는 즉시 철폐(EIF), 10년 철폐(B10), 미·페루 FTA 양허안 준수(US21),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13개로 전체 세번의 88.6%이며, 10년 철폐 세번은 3개로 0.2%임. 10년 이내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88.8%에 해당함.

- 미국과 페루 간의 FTA 협상 결과를 적용하는 세번은 56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쇠고기, 밀크와 크림, 사우어크림, 땅콩, 초콜릿, 유아용 조제품, 아이스크림, 버터 대체품, 담배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35개로 전체 농산물의 7.9%를 차지함. 미국이 페루에게 TRQ를 제공하는 품목은 치즈, 농축 우유, 연유, 낙농품 가공 제품들, 설탕, 정제당, 설탕조제품 등이 있음.

표 3-20. 미국의 對 페루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0	6	99	5.8
04류	낙농품	12.4	173	0	16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6	0	0	66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6	3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45	0	0	45	2.7
18류	코코아	5.8	46	0	14	60	3.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2	57	3.2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0	3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7	0	3	70	4.1
22류	음료·주류·식초	1.4	71	0	1	72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2	35	2.1
24류	연초	90.7	49	0	7	56	3.3
합계 (비중)	9.1	1513 (88.6)	3 (0.2)	56 (3.3)	135 (7.9)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10. 對 싱가포르 양허결과

- 미국은 TPP에서 싱가포르에게는 모든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11.11. 對 베트남 양허결과

- 미국은 베트남에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6년 철폐(B6), 7년 철폐(B7), 10년 철폐(B10), 16년 철폐(B16), TRQ 등으로 다양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909개로 전체 농산물의 53.3%를 차지함. 3년 철폐는 429개로 25.1%를 차지하고 5년 철폐는 166개 세번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음.
 - 6년 철폐와 7년 철폐는 각각 7개(0.4%), 3개(0.2%) 세번이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146개(8.6%)이며, 주로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등과 같은 설탕조제품이나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24류 연초가 이에 해당함. 1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의 97.2%를 차지함.
 - 16년간 장기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2개로 전체 농산물의 0.7%를 차지하며, 혼합시럽, 설탕조제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35개 세번(2.1%)이며, 설탕, 정제당, 설탕조제품(16년 철폐 이외의 세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표 3-21. 미국의 對 베트남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EIF	B3	B5	B6	B7	B10	B16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68	21	5	0	0	5	0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57	191	3	0	0	0	0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0.6	20	0	1	0	0	0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8	1	0	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96	42	20	0	0	9	0	0	0	167	9.8
08류 과일·견과류	5.4	90	14	11	0	0	4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0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0	0	0	0	0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31	3	4	0	0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2	0	0	0	0	3	0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0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1	0	0	0	0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41	3	17	0	0	6	0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4	4	35	0	0	6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17	0	0	0	0	34	0	15	0	66	3.9
18류 코코아	5.8	19	28	2	0	0	17	0	12	0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23	33	1	0	0	7	2	4	0	70	4.1
20류 채소·과일의 조제품	11.1	86	45	33	6	0	14	0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34	29	9	1	0	2	10	4	0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40	4	24	0	3	2	0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0	4	0	0	0	1	0	0	0	35	2.1
24류 연초	90.7	20	0	0	0	0	36	0	0	0	56	3.3
합계 (비중)	9.1	909 (53.3)	429 (25.1)	166 (9.7)	7 (0.4)	3 (0.2)	146 (8.6)	12 (0.7)	35 (2.1)	17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2. 베트남

- 베트남 농산물 세번은 1,143개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3%임.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는 08류 과실·견과류, 09류 커피 향신료,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 특히 24류 연초와 22류 음료·주류·식초의 관세율이 높음.
- 베트남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종가세로 관세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관세율은 0~135%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현재 관세가 0%인 세번은 128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1.2%를 차지하고 있음. 다른 TPP 회원국에 비하면 현재 관세율이 0%인 세번의 숫자는 적은 편임.
- 베트남 TPP 회원국에 모두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나, 매우 복잡하게 양허를 하였음. 기본적으로 즉시 철폐(EIF), 단계별 관세철폐(B2~B16), TRQ, 현행관세 유지 등으로 단순한 구조이나, 단계별 관세철폐 항목이 매우 많으며 연도별 균등철폐 외에도 다양한 관세철폐 방식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양허하였음.
 - 예를 들어 11년 철폐(B11) 내에는 균등 철폐하는 B11 외에도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관세감축을 하는 9가지 양허안(VN11-a~VN11-i)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있음.¹⁹
-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세번은 96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84.0%를 차지하고 있음.

¹⁹ 세번별 구체적인 내용은 베트남의 양허안 참조.

- 즉시 철폐(EIF) 세번은 312개로 전체 농산물의 27.3%임. 다른 TPP 회원국에 비하여 즉시 철폐 비중이 낮은 편임.
- 2년 철폐(B2) 세번은 2개(0.2%)이며, 배와 체리가 이에 해당함.
- 3년 철폐(B3) 세번은 65개(5.7%)이며, 쇠고기, 밀크와 크림, 농축우유, 버터밀크, 버터, 데어리스프레드, 감자, 완두콩 및 두류, 코코넛, 아몬드, 헤이즐넛, 호도,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자몽, 레몬, 사과, 복숭아, 자두(신선, 건조) 등이 이에 해당함.
- 4년 철폐(B4) 세번은 239개(20.9%)이며, 양고기, 블루바인치즈, 난황, 토마토, 톨립, 오이, 버섯, 고추, 양파, 마늘, 브라질넛, 캐슈넛,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바나나, 아보카도, 구아버, 망고스틴, 망고, 감귤, 살구, 딸기, 체리(일시저장처리), 커피(원두), 차류, 생강, 후추, 육두구 등과 같은 각종 향신료, 옥수수가루, 쌀가루, 맥아, 밀전분, 감자전분, 매니옥전분, 팜넛, 유아용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곡물조제식료품, 귀리빵,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토스트된 식빵, 케이크, 페스트리, 토마토페이스트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5년 철폐(B5) 세번은 56개(4.9%)이며, 쇠고기(식용설육), 돼지고기(식용설육), 옥수수, 옥수수(펠리트, 압착 플레이크),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초콜릿과자, 땅콩버터, 오렌지주스(냉동), 자몽주스,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칠리소스, 인삼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 6년 철폐(B6) 세번은 149개(13.0%)이며, 오리고기, 고래고기, 달걀, 오렌지(건조), 살구(건조), 사과(건조),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캐슈넛, 브라질넛, 대추야자 등의 혼합물), 건조한 채두류, 땅콩유, 올리브유,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조제저장처리한 채소(콩,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옥수수, 죽순 등), 잼(기타), 기타 조제저장처리한 과일(파인애플, 감귤류, 배, 살구, 체리, 복숭아, 딸기 등), 인스턴트 커피, 간장, 소스류 등이 이에 해당함.
- 7년 철폐(B7) 세번은 36개(3.1%)이며, 해바라기씨유, 동식물성 유지와 기름(팜오일의 것, 땅콩, 대두의 것, 올리브의 것 등), 설탕과자, 맛을 가

미한 발포성 광수 또는 탄산수, 두유음료 등이 이에 해당함.

- 8년 철폐(B8) 세번은 81개(7.1%)이며, 돼지고기(냉동), 베이컨, 햄, 건조 버섯,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분, 코코아두, 코코아 페이스트, 파스타, 블랙커런트주스 등이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B10) 세번은 20개(1.7%)이며, 돼지고기(냉장), 소시지, 식용설육(기타조제저장처리, 칠면조, 닭, 파충류의 것 등) 등이 이에 해당함.
-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철폐 세번은 162개로 전체 농산물 중 14.2%를 차지함.
- 11년 철폐(B11) 세번은 109개(9.5%)이며, 닭고기(절단육), 소와 양의 지방, 라드유, 라놀린, 야자유, 모조버터기름, 액체성마가린, 액체혼합물 기름조제품, 사탕수수당, 포도당, 포도당시럽, 과당, 과당시럽, 캐러멜당, 맥주, 포도주, 위스키, 삼수, 아카크술, 파인애플 주정 등이 이에 해당함.
 - 12년 철폐(B12) 세번 32개(2.8%)이며, 칠면조고기, 기타 포도주, 사과주, 배술,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브랜디, 진, 제네바, 보드카, 리큐어류 등이 이에 해당함.
 - 13년 철폐(B13) 세번은 4개(0.3%)이며, 닭고기(통닭)이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B16) 세번은 17개(1.5%)이며, 시가, 궤련, 시가털로, 기타 제조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모두 12개(1.0%)이며, 가공되지 않은 담배(잎 담배 및 담배부산물)가 이에 해당함.
- 현행관세(VN22)를 유지하는 세번은 9개(0.8%)이며, 계란, 오리알, 사탕수수, 사탕무, 정제사탕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22. 베트남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관세율 (%)										양허안										비중 (%)
	EIF	B2	B3	B4	B5	B6	B7	B8	B10	B11	B12	B13	B16	TRQ	VN22	합계					
01류 산 동물	3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8	3.3				
02류 육류	0	0	6	10	7	8	1	14	3	12	5	4	0	0	0	70	6.1				
04류 낙농품	19	0	20	8	2	3	0	0	0	0	0	0	0	0	3	55	4.8				
05류 기타 동물성생산물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2.7				
06류 산수푸·꽃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2.3				
07류 채소	43	0	12	26	1	6	0	6	0	0	0	0	0	0	0	94	8.2				
08류 과일·견과류	21	2	17	25	0	8	0	0	0	0	0	0	0	0	0	73	6.4				
09류 커피·향신료	0	0	0	49	0	0	0	0	0	0	0	0	0	0	0	49	4.3				
10류 곡물	22	0	0	0	2	2	0	0	0	0	0	0	0	0	0	26	2.3				
11류 밀가루·전분	2	0	0	25	4	8	0	0	0	0	0	0	0	0	0	39	3.4				
12류 채유용종자·인삼	46	0	1	15	0	0	0	0	0	1	0	0	0	0	0	63	5.5				
13류 식물성추출물	12	0	0	5	0	0	0	0	0	2	0	0	0	0	0	19	1.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물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6				
15류 동식물성유지	5	0	5	2	13	28	22	32	0	44	0	0	0	0	0	151	13.2				
16류 육·어류조제품	0	0	0	30	0	0	0	8	17	4	0	0	0	0	0	5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3	0	0	0	0	0	4	0	0	21	0	0	0	0	6	34	3.0				
18류 코코아	0	0	0	0	2	6	3	5	0	0	0	0	0	0	0	16	1.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0	0	3	36	0	5	0	7	0	0	0	0	0	0	0	51	4.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	0	0	3	14	47	0	6	0	3	0	0	0	0	0	73	6.4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4	0	0	5	11	27	0	0	0	0	0	0	0	0	0	47	4.1				
22류 음료·주류·식초	0	0	1	0	0	1	6	3	0	22	27	0	0	0	0	60	5.2				
23류 조제사료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2.9				
24류 연조	0	0	0	0	0	0	0	0	0	0	0	0	17	12	0	29	2.5				
합계	312	2	65	239	56	149	36	81	20	109	32	4	17	12	9	1143					
(비중)	(27.3)	(0.2)	(5.7)	(20.9)	(4.9)	(13.0)	(3.1)	(7.1)	(1.7)	(9.5)	(2.8)	(0.3)	(1.5)	(1.0)	(0.8)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제 4 장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

1.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TPP는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TPP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

- 제2장 24조에서는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 또는 수출보험(Insurance Programmes)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음.
 - 수출경쟁분야는 WTO의 협상의 주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투명성, 자체수지균형, 상환조건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의 조항에 대한 규율을 개발하는 데 WTO와 공조함.

2.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 제2장 25조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 WTO 회원국 중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무역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혜 금융제도 철폐
 -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

3. TRQ 관리방식²⁰

- 제2장 30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일반조항에 대해 GATT 1994 제13조의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과 본 협정문 제2장 13조의 수입허가를 따르며, 모든 회원국의 TRQ는 관세양허 일정(부속서 2-D)에 포함되어 있음.
 - 각 회원국은 TRQ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공평하게 관리해야 함.
 -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제2장 31조에서는 TRQ 관리와 자격요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수입품의 규격이나 등급, 용도, 포장크기 등과 관련하여 부속서 2-D의 규정 이상의 새로운 조건이나 추가적인 조건, 제한이나 자격요건

²⁰ 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할 것.

- 을 부과할 수 없음.
- 상품 수입 시 TRQ 활용에 대해 새로운 조건이나 추가적인 조건, 제한이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최소 시행 45일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 제한, 자격요건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위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은 후 이행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어야 함.
- 제2장 32조에 TRQ 할당과 관련하여 TRQ가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자격요건이 있으면 신청과 할당의 기회가 제공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국에서 생산자단체, 국내산 구매 조건부, 가공업자와 관련된 할당을 이행하지 않음.
- 그 이외에도 선적 가능한 수량과 수입업자의 요청 수량으로 배분하고 모든 세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물량이 기준치보다 많을 경우 공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할당해야 함. 또한, 신청서 제출기한이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 제2장 33조에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해야 함.
- 제2장 34조에 투명성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TRQ 운영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담당처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해야 함. 또한, 물량, 수입권자 정보, 이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함.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제7장의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적인 상황에 대응한 조치로 과학 및 위험분석, 감사, 수입검사, 검증, 투명성 및 협의절차 등 총 18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물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SPS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함.
 - SPS 조치에 대응할 경우 18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7일 이내에 전문가와 협의해야 함.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acific Four: P4)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P4 체제의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조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참여의사 표명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의 전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

- 2008년에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2012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에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함.

- TPP는 19차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각료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음.
 - TPP의 주요 협정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 (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협정문 공개결과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TPP 회원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상당수의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 비중이 90% 이상인 국가들임.
-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발효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또한 브루나이, 페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도 90%이상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음.
 - 10년 이상 장기 철폐를 하는 세번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의 비중이 높음.
- 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감축을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특히 베트남은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임.
- 또한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하기도 하였음. 특히 TPP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였으며,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음.
 - 일본과 칠레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하여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멕시코는 국가별로 관세감축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동일 세번 내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하여 양허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민감도를 확보함.
- 한편,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음. 또한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가격밴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번에 대해서 관세는 철폐하였지만 가격밴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표 5-1. TPP 회원국의 유형별 농산물 양허결과

단위: %

	즉시 철폐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철폐	부분 감축	계절 관세	TRQ	국가별 차등	현행 관세 유지	기타
호주	99.9	0.1	-	-	-	-	-	-	-
브루나이	98.1	1.4	0.5	-	-	-	-	-	-
캐나다	83.7	1.3	7.5	-	-	7.0	0.5	-	-
칠레	84.6	3.3	-	-	-	-	12.1	-	-
일본	49.2	18.9	15.3	6.2	0.1	7.2	3.1	-	-
말레이시아	91.6	-	7.1	-	-	1.3	-	-	-
멕시코	76.1	12.4	5.9	0.9	-	-	3.9	-	0.7
뉴질랜드	98.7	1.3	-	-	-	-	-	-	-
페루	84.3	8.7	7.0	-	-	-	-	-	-
싱가포르	100.0	-	-	-	-	-	-	-	-
미국	42.8	-	-	-	-	-	57.2	-	-
베트남	27.3	56.7	14.2	-	-	1.0	-	0.8	-

주: 각 국가의 농산물 세번 중 양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임.

- 그 밖에 농산물 관련 TPP 협정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임.
 - TPP 협정의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

고,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제2장 25조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①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② WTO 회원국 중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무역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혜 금융제도 철폐 ③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PP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TRQ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TRQ 관리와 자격요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TPP 협상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 FTA보다 양허수준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특히 농업분야가 민감한 우리나라는 TPP 농업분야의 협상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을 비롯하여 TPP 회원국의 상당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과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장기 철폐의 세번의 비중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민감품목에 대하여 관세의 완전 철폐 대신 부분감축이나 계절관세를 도입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TPP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전략임. 특히, 일본과 칠레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행관세를 유지한 세번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다수의 TPP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전략임.
- 그러나 TPP가 체결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할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많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을 한 상태이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TPP 회원국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과 같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이들 국가가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의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과 일본 총선 등과 같이 국제 정치·외교 분야의 크고 작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의회 비준 심의까지 고려하면 TPP 발효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TPP 참여 시점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됨.
- TPP 협상은 상품분야 이외의 규범분야에서는 기존의 WTO 협상보다 강화된 협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여 시 우리나라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부 록 1

각국의 TRQ 양허현황

부표 1-1. 캐나다의 TRQ 양허현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Milk	8,333	16,667	25,000	33,333	41,667	50,000	50,330	51,005	51,515	52,030	52,551	53,076	53,607	54,143	54,684	55,231	55,783	56,341	56,905	56,965
Cream	500	515	530	546	563	580	597	615	633	652	672	692	713	734	754	774	794	734	734	734
Skim milk powders	1,250	2,500	3,750	5,000	6,250	7,500	7,725	7,957	8,195	8,441	8,685	8,935	9,224	9,501	9,768	10,079	10,382	10,683	11,014	11,014
Milk powders	1,000	1,010	1,020	1,030	1,041	1,051	1,062	1,072	1,083	1,094	1,105	1,116	1,127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Cream powders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4	114	114	114	114	114
Concentrated milk	333	667	1,000	1,333	1,667	2,000	2,040	2,081	2,122	2,165	2,208	2,252	2,297	2,343	2,380	2,438	2,487	2,536	2,587	2,587
Yogurt and buttermilk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6,120	6,242	6,367	6,495	6,624	6,757	6,892	7,030	7,171	7,314	7,460	7,609	7,762	7,762
Powdered Buttermilk	750	765	780	795	812	828	845	862	879	896	914	933	951	970	970	970	970	970	970	970
Whey powder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6,050	6,121	6,182	6,244	6,306	6,368	6,430	6,492	6,554	6,616	6,678	6,740	6,802	6,864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667	1,333	2,000	2,667	3,333	4,000	4,040	4,080	4,121	4,162	4,204	4,246	4,289	4,331	4,375	4,418	4,463	4,507	4,552	4,532
Butter	750	1,500	2,250	3,000	3,750	4,500	4,545	4,590	4,636	4,683	4,730	4,777	4,825	4,873	4,922	4,971	5,021	5,071	5,121	5,121

단위: 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Industrial cheese	1,329	2,638	3,988	5,317	6,646	7,975	8,655	8,135	8,217	8,299	8,382	8,466	8,550	8,636	8,722	8,809	8,897	8,986	9,076	9,076
Mozzarella and prepared cheese	483	967	1,450	1,933	2,417	2,900	2,929	2,958	2,988	3,018	3,048	3,078	3,109	3,140	3,172	3,203	3,235	3,268	3,300	3,300
Cheeses of all types	604	1,208	1,813	2,417	3,021	3,625	3,661	3,688	3,735	3,772	3,810	3,848	3,886	3,925	3,965	4,004	4,044	4,085	4,126	4,126
Ice cream and mixes	1,000	1,010	1,020	1,030	1,041	1,051	1,062	1,072	1,083	1,094	1,105	1,116	1,127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Other dairy	1,000	1,010	1,020	1,030	1,041	1,051	1,062	1,072	1,083	1,094	1,105	1,116	1,127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1,138
Broiler hatching eggs and chicks	166,667	333,333	500,000	666,667	833,333	1,000,000	1,000,000	1,020,100	1,030,301	1,040,604	1,051,010	1,061,520	1,072,135	1,082,857	1,093,685	1,104,622	1,115,668	1,126,825	1,138,083	1,138,083
Chicken	3,917	7,833	11,750	15,667	19,583	23,500	23,735	23,972	24,212	24,454	24,699	24,946	25,195	25,447	25,702	25,959	26,218	26,480	26,745	26,745
Turkey	583	1,167	1,750	2,333	2,917	3,500	3,535	3,570	3,606	3,642	3,679	3,715	3,752	3,790	3,828	3,866	3,905	3,944	3,983	3,983
Eggs	278,333	556,667	835,000	1,113,333	1,391,667	1,670,000	1,687,000	17,035,670	17,206,027	17,378,087	17,551,888	17,727,387	17,904,660	18,083,707	18,264,544	18,447,189	18,631,661	18,817,978	19,006,158	19,006,158

주 1) Milk: 0401.10.20, 0401.20.20

2) Cream: 0401.30.20

3) Skim milk powders: 0402.10.20

4) Milk powders: 0402.21.12, 0402.29.12

5) Cream powders: 0402.21.22, 0402.29.22

6) Concentrated milk: 0402.91.20, 0402.99.20

7) Yogurt and buttermilk: 0403.10.20, 0403.90.92

8) Powdered Buttermilk: 0403.90.12

9) Whey powder: 0404.10.22

10)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0404.90.20

11) Butter: 0405.10.20, 0405.20.20, 0405.90.20

- 12) Industrial cheese: 0406.10.20, 0406.20.12, 0406.20.92, 0406.30.20, 0406.40.20, 0406.90.12, 0406.90.22, 0406.90.32, 0406.90.42, 0406.90.52, 0406.90.62, 0406.90.72, 0406.90.82, 0406.90.92, 0406.90.94, 0406.90.96, 0406.90.99
- 13) Mozzarella and prepared cheese: 0406.20.12, 0406.20.92, 0406.30.20, 0406.90.62
- 14) Cheeses of all types: 0406.10.20, 0406.20.12, 0406.20.92, 0406.30.20, 0406.40.20, 0406.90.12, 0406.90.22, 0406.90.32, 0406.90.42, 0406.90.52, 0406.90.62, 0406.90.72, 0406.90.82, 0406.90.92, 0406.90.94, 0406.90.96, 0406.90.99
- 15) Ice cream and mixes: 1806.20.22, 1806.90.12, 1901.90.32, 1901.90.52, 2105.00.92, 2202.90.43
- 16) Other dairy: 1517.90.22, 1901.20.12, 1901.20.22, 1901.90.34, 1901.90.54, 2106.90.32, 2106.90.34, 2106.90.94, 2309.90.32
- 17) Broiler hatching eggs and chicks: 0105.11.22, 0407.00.12
- 18) Chicken: 0105.94.92, 0207.11.92, 0207.12.92, 0207.13.92, 0207.13.93, 0207.14.22, 0207.14.92, 0207.14.93, 0209.00.22, 0210.99.12, 0210.99.13, 1601.00.22, 1602.20.22, 1602.32.13, 1602.32.14, 1602.32.94, 1602.32.95
- 19) Turkey: 0105.99.12, 0207.24.12, 0207.24.92, 0207.25.12, 0207.25.92, 0207.26.20, 0207.26.30, 0207.27.12, 0207.27.92, 0207.27.93, 0209.00.24, 0210.99.15, 0210.99.16, 1601.00.32, 1602.20.32, 1602.31.13, 1602.31.14, 1602.31.94, 1602.31.95
- 20) Eggs: 0407.00.19, 0408.11.20, 0408.19.20, 0408.91.20, 0408.99.20, 2106.90.52, 3502.11.20, 3502.19.20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부표 1-2. 일본의 TRQ 양허현황

	단위: 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Wheat Product	750	800	850	900	95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Food Preparations Made Primarily of Wheat	15,000	16,500	18,000	19,500	21,0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Wheat Flour, Pellets, Rolled and Food Preparations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Uncooked Udon, Somen and Sob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ood Preparations of Barley	100	103	106	109	112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Barley Flour, Groats and Pellets	300	340	380	420	46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Barley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Fresh Cheese for Use as Materials for Shredded Cheese	-	-	-	-	-	-	-	-	-	-	-	-	-	-	-
Butter	39,341	40,652	41,964	43,275	44,587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45,898
Skimmed Milk Powder	20,659	21,348	22,036	22,725	23,413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24,102
Milk Powder and Butter	1,500	1,650	1,800	1,950	2,10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Milk Powder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4,000	48,000	52,000	56,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9,500	10,300	11,100	11,900	12,700	13,500	14,300	15,100	15,900	16,7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Prepared Edible Fats and Oils	1,500	1,580	1,660	1,740	1,820	1,900	1,980	2,060	2,140	2,220	2,300	2,300	2,300	2,300	2,300
Evaporated Milk	1,500	2,150	2,800	3,450	4,10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Condensed Milk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Chewing Gum and Other Sugar Confectionery, Containing Cocoa	180	198	216	234	252	270	288	306	324	342	360	360	360	360	360
Cocoa Preparations, Containing Added Sugar	2,700	2,920	3,160	3,390	3,620	3,850	4,080	4,310	4,540	4,770	5,000	5,000	5,000	5,000	5,000
Coffee, Tea Mixes, Food Preparations and Doughs	8,600	8,940	9,280	9,620	9,960	10,300	10,640	10,980	11,320	11,66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Preparations of Peas, Beans and Leguminous Vegetables	380	464	548	632	716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TPP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TPP	Candies, White Chocolate and Confectionary	3000	3300	3600	3900	4200	4500	4800	5100	5400	5700	6000	6000	6000	6000
	Chocolate	9100	9990	10880	11770	12660	13550	14440	15330	16220	17110	18000	18000	18000	18000
	Food Preparations	1920	2028	2136	2244	2352	2460	2568	2676	2784	2892	3000	3000	3000	3000
	Cane Sugar under 85 Polaimetric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0	25.0	25.0
	Cocoa Powder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Cocoa Powder	12000	13320	14640	15960	1728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Food Preparations	2200	2250	2300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2700	2700	2700	2700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More Than 50% of Sucrose	10500	10680	10860	11040	11220	11400	11580	11760	11940	12120	12300	12300	12300	12300
	Food Preparations (Base of Vitamins and Sugar is the Largest Ingredient)	50	55	60	65	70	75	75	75	75	75	75	75	75	75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Sugar and Dairy	5500	6040	6580	7120	7660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8200
	Sugar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Starch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Rice for the United States	50000	50000	50000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62000	64000	66000	68000	70000	70000
	Rice for Australia	6000	6000	6000	6240	6480	6720	6960	7200	7440	7680	7920	8160	8400	8400
	Mixes and Doughs and Cake Mixes for the United States	10500	10890	11100	11400	117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Mixes and Doughs and Cake Mixes for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6800	7040	7280	7520	776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CSQ	Wheat for the United States	114000	120000	126000	132000	138000	14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Wheat for Australia	38000	40000	42000	44000	46000	48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Wheat for Canada	40000	42167	44333	46500	48667	50833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Malt, Not Roasted for the United States	20000	22400	24800	27200	296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Malt, Not Roasted for Australia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Malt, Not Roasted for Canada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Malt, Roasted for the United States	700	735	770	805	840	875	910	945	980	1015	1050	1050	105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Malt, Roasted for Australia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Malt, Roasted for Canada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Processed Cheese for the United States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0	150	150	150
Processed Cheese for Australia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0	150	150	150
Processed Cheese for New Zealand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0	150	150	150
Whey' MineralConcentrate for the UnitedStates	1000	1300	1600	1900	2200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4000	4000	4000	4000
Whey' MineralConcentrate for Australia	4000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5000	5000	5000	5000
Whey' Prepared Whey for Infant Formula for the United State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Whey' Permolate for the United States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000	2000	2000	2000
Whey for New Zealand	1300	1340	1380	1420	1460	1500	1540	1580	1620	1660	1700	1700	1700	1700	1700
Glucose and Fructose for the United States	450	540	630	720	810	900	990	1080	1170	1260	1350	1350	1350	1350	1350
Corn and Potato Starch for the United States	2500	2650	2800	2950	3100	3250	3250	3250	3250	3250	3250	3250	3250	3250	3250
Inulin for the United States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0	250	250	250
Inulin for Chile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0	50	50	50

CSQ

<TPP>

- 주 1) Wheat Products: 190410.221, 190420.221, 190430.010, 190490.210, 210690.214
- 2) Food Preparations Made Primarily of Wheat: 190190.242, 190190.247, 190190.252, 190190.267
- 3) Wheat Flour, Pellets, Rolled and Food Preparations: 110100.011, 110100.091, 110290.210, 110311.010, 110319.210, 110320.110, 110320.510, 110419.111, 110419.121, 110429.111, 110429.121, 110811.010, 190120.131, 190120.151, 190190.151, 190190.171
- 4) Uncooked Udon, Somen and Soba: 190219.092
- 5) Food Preparations of Barley: 190120.141, 190190.161, 190420.231, 190490.310, 210690.216
- 6) Barley Flour, Groats and Pellets: 110290.110, 110319.110, 110320.410, 110419.410, 110429.410, 190410231
- 7) Barley: 100300.019

- 8) Fresh Cheese for Use as Materials for Shredded Cheese: 040610.090
- 9) Butter: 040510.129, 040510.229, 040520.090, 040590.190, 040590.229
- 10) Skimmed Milk Powder: 040210.129, 040210.212, 040210.229, 040221.212, 040221.229, 40229291
- 11) Milk Powder and Butter Milk Powder: 040221.119, 040221.129, 040229.119, 040229.129, 040390.113, 040390.123, 040390.133
- 12) Milk Powder: 040221.119, 040221.129
- 13, 14)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180620.290
- 15) Prepared Edible Fats and Oils: 210690.291
- 16) Evaporated Milk: 040291.129 and 040291.290
- 17) Condensed Milk: 040299.129 and 040299.290
- 18) Chewing Gum and Other Sugar Confectionery, Containing Cocoa: 180620.111, 180620.119
- 19) Cocoa Preparations, Containing Added Sugar: 180632.211, 180632.219, 180690.211, 180690.219
- 20) Coffee, Tea Mixes, Food Preparations and Doughs: 170290.219, 190120.239, 190190.217, 190190.248, 190190.253, 210112.110, 210112.246, 210120.246, 210690.251, 210690.271, 210690.272, 210690.279, 210690.281
- 21) Preparations of Peas, Beans and Leguminous Vegetables: 200540.190, 200551.190, 200599.119
- 22) Candies, White Chocolate and Confectionary: 170490.210, 170490.230, 170490.290
- 23) Chocolate: 180631.000, 180632.100, 180690.100
- 24) Food Preparations: 210690.590
- 25) Cane Sugar under 98.5 Polarimetric: 170111.110
- 26) Cocoa Powder: 180610.100
- 27) Cocoa Powder: 180620.190
- 28) Food Preparations: 190190.211
- 29)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More Than 50% of Sucrose: 190190.219
- 30) Food Preparations (Base of Vitamins and Sugar is the Largest Ingredient): 210690.282 and 210690.510
- 31)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Sugar and Dairy: 210690.284
- 32) Sugar: 170111.190, 170111.200, 170112.100, 170112.200, 170191.000, 170199.100, 170199.200, 170290.110, 170290.211, 170290.521, 210690.221
- 33) Starch: 110812.090, 110813.090, 110814.090, 110819.019, 110819.099, 110820.090, 190120.159, 190190.179

<CSQ>

- 주 1) Rice for the United States: 100610.010, 100620.010, 100630.010, 100640.010, 110290.310, 110319.510, 110320.350, 110419.250, 110429.250, 190120.122, 190120.162, 190190.142, 190190.587, 190410.211, 190420.211, 190490.120, 210690.517
- 2) Rice for Australia: 100610.010, 100620.010, 100630.010, 100640.010, 110290.310, 110319.510, 110320.350, 110419.250, 110429.250, 190120.122, 190120.162, 190190.142, 190190.587, 190410.211, 190420.211, 190490.120, 210690.517
- 3) Mixes and Doughs and Cake Mixes for the United States: 190120.222, 190120.232, 190120.235, 190120.243
- 4) Mixes and Doughs and Cake Mixes for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90120.222, 190120.232, 190120.235 and 190120.243
- 5) Wheat for the United States: 100110.010, 100190.011, 100190.019, 100890.021
- 6) Wheat for Australia: 100110.010, 100190.011, 100190.019, 100890.021
- 7) Wheat for Canada: 100110.010, 100190.011, 100190.019, 100890.021
- 8) Malt, Not Roasted for the United States: 110710.029
- 9) Malt, Not Roasted for Australia: 110710.029
- 10) Malt, Not Roasted for Canada: 110710.029
- 11) Malt, Roasted for the United States: 110720.020
- 12) Malt, Roasted for Australia: 110720.020
- 13) Malt, Roasted for Canada: 110720.020
- 14) Processed Cheese for the United States: 040630.000
- 15) Processed Cheese for Australia: 040630.000
- 16) Processed Cheese for New Zealand: 040630.000
- 17) Whey: Mineral Concentrate for the United States: 040410.129, 040410.169
- 18) Whey: Mineral Concentrate for Australia: 040410.129, 040410.169
- 19) Whey: Prepared Whey for Infant Formula for the United States: 040410.149, 040410.189, 040490.118, 040490.128, 040490.138
- 20) Whey Permeate for the United States: 040410.149, 040410.139
- 21) Whey for New Zealand: 040410.129, 040410.139, 040410.149, 040410.169, 040410.189, 040490.118, 040490.128, 040490.138
- 22) Glucose and Fructose for the United States: 170230.221, 170230.229, 170240.220, 170260.220, 170290.529, 70230.210, 170240.210, 170260.210
- 23) Corn and Potato Starch for the United States: 110812.090, 110813.090
- 24) Inulin for the United States: 110820.090
- 25) Inulin for Chile: 110820.090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부표 1-3. 말레이시아의 TRQ 양허현황

	단위: 마리, 톤, 리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Day Old Chick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eighing not more than 185gram	2,000,000	2,200,000	2,420,000	2,662,000	2,928,200	3,221,020	3,543,122	3,897,494	4,287,178	4,715,885	5,187,485	5,706,233	6,276,857	6,904,542	7,594,997	8,354,406
Fowls of Species Gallus Domesticus Weighing not more than 2,000 gram	30,000	33,000	36,300	39,930	43,923	48,315	53,147	58,462	64,308	70,738	77,812	85,594	94,153	103,568	113,925	11,392
Meat of Swine, Fresh or Chilled -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0	2.2	2.4	2.7	2.9	3.2	3.5	3.9	4.3	4.7	5.2	5.7	6.3	6.9	7.6	7.6
Meat of Swine, Frozen -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00	220	242	266	293	322	354	390	429	472	519	571	628	690	759	759
Meat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2	2.2	2.42	2.662	2.9282	3.22102	3.543122	3.897494	4.287178	4.715885	5.187485	5.706233	6.276857	6.904542	7.594997	8.354406
Meat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not cut in pieces, frozen	400	440	484	532	586	644	709	779	857	943	1,037	1,141	1,255	1,381	1,519	1,671
Edible Cuts and Offal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Fresh or Chilled	50	55	61	67	73	81	89	97	107	118	130	143	157	173	190	209
Edible Cuts and Offal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Frozen	20,000	22,000	24,200	26,620	29,282	32,210	35,431	38,974	42,872	47,159	51,855	57,062	62,769	69,045	76,350	83,545
Of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Milk; Liquid	300,000	330,000	363,000	399,300	439,200	483,153	531,468	584,615	643,077	707,384	778,123	855,935	941,529	1,035,681	1,139,250	1,139,250
Of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But Not Exceeding 6%-Milk; Liquid	2,000,000	2,200,000	2,420,000	2,662,000	2,928,200	3,221,020	3,543,122	3,897,494	4,287,178	4,715,885	5,187,485	5,706,233	6,276,857	6,904,542	7,594,997	7,594,997
Of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Milk; Liquid	1,000,000	1,100,000	1,210,000	1,331,000	1,464,100	1,610,510	1,771,561	1,948,717	2,143,589	2,357,948	2,593,742	2,853,117	3,138,428	3,452,271	3,797,488	3,797,488
For Hatching: Hen's Eggs	70,000	77,000	84,700	93,170	102,487	112,736	124,009	136,410	150,051	165,056	181,522	199,718	219,680	241,659	265,825	292,407
Duck's Eggs in Shell for Hatching	70,000	77,000	84,700	93,170	102,487	112,736	124,009	136,410	150,051	165,056	181,522	199,718	219,680	241,659	265,825	292,407
Other: Hen's Eggs	300,000	230,000	292,000	266,200	292,820	322,102	354,312	389,743	428,718	471,590	518,748	570,623	627,686	690,454	759,500	835,450
Duck's Eggs in Shell, Preserved or Cooked - Other	200,000	220,000	242,000	266,200	292,820	322,102	354,312	389,743	428,718	471,590	518,748	570,623	627,686	690,454	759,500	835,450

주 1) Day Old Chick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eighing not more than 185gram: 010511900

2) Fowls of Species Gallus Domesticus Weighing not more than 2,000 gram: 010594190

3) Meat of Swine, Fresh or Chilled -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20311000

- 4) Meat of Swine, Frozen -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20321000
 - 5) Meat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020711000
 - 6) Meat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not cut in pieces, frozen: 020712000
 - 7) Edible Cuts and Offal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Fresh or Chilled: 020713000
 - 8) Edible Cuts and Offal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Frozen: 020714000
 - 9) Of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Milk: Liquid: 040110110
 - 10) Of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But Not Exceeding 6%: Milk: Liquid: 040120110
 - 11) Of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Milk: Liquid: 040130110
 - 12) For Hatching: Hen's Eggs: 040700111
 - 13) Duck's Eggs in Shell for Hatching: 040700112
 - 14) Other: Hen's Eggs: 040700910
 - 15) Duck's Eggs in Shell, Preserved or Cooked - Other: 040700920
-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부표 1-4. 멕시코의 TRQ 양허현황

단위: 톤, 리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50,000	262,500	275,000	287,500	300,000	312,500	325,000	337,500	350,000	362,5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Milk powder:	25,000	26,700	28,400	30,100	31,800	33,500	35,200	36,900	38,600	40,300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Evaporated Milk	500	525	550	575	600	625	650	675	700	725	750	750	750	750	750
Condensed Milk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00	1,500	1,500	1,500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000	2,000	2,000	2,000
Butter	1,500	1,53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2,000	2,000	2,000	2,000
Cheese	4,250	4,475	4,700	4,925	5,150	5,375	5,600	5,825	6,050	6,275	6,500	6,500	6,500	6,500	6,500
Dairy-based preparations	2,000	2,050	2,100	2,150	2,200	2,250	2,300	2,350	2,400	2,450	2,500	2,500	2,500	2,500	2,500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10,000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Country Specific Allocation on Sugar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7%할당

주 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1

2) Milk powder.: 0402.10.01 and 0402.21.01

3) Evaporated Milk: 0402.91.01 and 0402.91.99

4) Condensed Milk: 0402.99.01 and 0402.99.99

5)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404.90.99

6) Butter: 0405.10 and 0405.20

7) Cheese: 0406.10.01.; 0406.20.01; 0406.30.01; 0406.30.99; 0406.90.03; 0406.90.04; 0406.90.05; 0406.90.06, 0406.90.99

8) Dairy-based preparations: 1901.90.04, 1901.90.05

9)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1511.10.01.; 1511.90.99, 1513.29.99

10) Country Specific Allocation on Sugar: 17.01, 1702.90.01, 1806.10.01., 2106.90.05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Chile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Beef	3,000	3,250	3,500	3,750	4,000	4,250	4,500	4,750	5,000	5,250	5,500	5,750	6,000	6,250	Unlimit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Japan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Cheese	10,000	10,000	11,818	12,727	13,636	14,545	15,455	16,364	17,273	18,182	19,091	20,000	20,600	21,218	21,855	22,185	22,881	24,397	25,335	26,085	26,085
	Skim Milk Powder	1,000	1,030	1,061	1,093	1,126	1,159	1,194	1,230	1,267	1,305	1,344	1,384	1,426	1,469	1,513	1,558	1,605	1,653	1,702	Unlimited	Unlimited
	Whole Milk Powder	3,000	3,120	3,245	3,375	3,510	3,650	3,796	3,948	4,106	4,270	4,441	4,618	4,800	4,986	5,195	5,403	5,619	5,844	6,077	6,573	6,573
	Concentrated Milk	1,000	1,030	1,061	1,093	1,126	1,159	1,194	1,230	1,267	1,305	1,344	1,384	1,426	1,469	1,513	1,558	1,605	1,653	1,702	1,754	1,754
NZ	Creams	8,000,000	8,480,000	8,988,800	9,528,128	10,099,816	10,705,816	11,348,153	12,029,042	12,750,785	13,515,632	14,326,782	15,186,388	16,097,572	17,063,426	18,087,282	19,172,466	20,322,813	21,542,182	22,834,713	24,204,796	24,204,796
	Butter and Butter Substitutes	4,000	4,667	5,333	6,000	6,667	7,333	8,000	8,667	9,333	10,000	10,600	11,200	11,800	12,400	13,000	13,600	14,200	14,800	15,400	16,000	16,000
	Organic Butter	500	515	530	546	563	580	597	615	633	652	672	692	713	734	756	779	802	826	851	877	877
	Other Dairy Products	5,500	5,775	6,064	6,367	6,685	7,020	7,371	7,739	8,126	8,532	8,959	9,407	9,877	10,371	10,890	11,434	12,005	12,606	13,236	13,888	13,888
	Cheese	5,527	6,190	6,933	7,765	8,686	9,740	10,909	12,218	13,684	Unlimited											
	Condensed and Evaporated Milk	13,284	14,856	16,638	18,635	20,871	23,376	26,181	29,323	32,841	Unlimited											
Peru	Processed Dairy Products	3,897	4,287	4,716	5,187	5,706	6,277	6,905	Unlimited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10,290	10,440	10,620	10,800	10,980	11,160	11,340	11,520	11,700	11,880	12,060	12,240	12,420	12,600	12,780	12,960	13,140	13,320	13,500	13,680	13,680
VN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협정문 참조

주 1) Raw Suga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17011150, 17011250
 2)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 17049078, 18061015, 18061028, 18061038, 18061055, 18061075, 18062073, 18062077, 18062094, 18062098, 18069039, 18069049, 18069059, 19012025, 19012035, 19012060, 19012070, 19019054, 19019058, 21011238, 21011248, 21011258, 21012038, 21012048, 21012058, 21039078, 21069046, 21069072, 21069076, 21069080, 21069091, 21069094, 21069097
- 3) Creams and Ice Cream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13025, 04039016, 21050020, 21050020
- 4) Condensed Milk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29170, 04029190, 04029945, 04029955
- 5) Butt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13075, 04022190, 04039065, 04039078, 04051020, 04052030, 04059020, 21069026, 21069036
- 6) Milk Powder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21050, 04022125, 04022150, 04039045, 04039055, 04041090, 23099028, 23099048
- 7) Other Dairy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22950, 04029990, 04031050, 04039095, 04041015, 04049050, 04052070, 15179060, 17049058, 18062026, 18062028, 18062036, 18062038, 18062082, 18062083, 18062087, 18062089, 18063206, 18063208, 18063216, 18063218, 18063270, 18063280, 18069008, 18069010, 18069018, 18069020, 18069028, 18069030, 19011030, 19011040, 19011075, 19011085, 19012015, 19012050, 19019043, 19019047, 21050040, 21069009, 21069066, 21069087, 22029028
- 8) American and Cheddar Cheese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 04061028, 04061038, 04062033, 04062039, 04062067, 04062071, 04063028, 04063038, 04063067, 04063071, 04069012, 04069054, 04069078, 04069084
- 9) Swiss-type, European-type and Other Cheese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Australia: 04061008, 04061018, 04061048, 04061058, 04061068, 04061078, 04061088, 04062028, 04062048, 04062053, 04062063, 04062075, 04062079, 04062083, 04062087, 04062091, 04063018, 04063048, 04063053, 04063075, 04063079, 04063083, 04063087, 04063091, 04064070, 04069018, 04069032, 04069037, 04069042, 04069048, 04069068, 04069074, 04069088, 04069092, 04069094, 04069097, 19019036
- 10) Cheese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61008, 04061018, 04061028, 04061038, 04061048, 04061058, 04061068, 04061078, 04061088, 04062028, 04062033, 04062039, 04062048, 04062053, 04062063, 04062067, 04062071, 04062075, 04062079, 04062083, 04062087, 04062091, 04063018, 04063028, 04063038, 04063048, 04063053, 04063063, 04063067, 04063071, 04063075, 04063079, 04063083, 04063087, 04063091, 04064070, 04069012, 04069018, 04069032, 04069037, 04069042, 04069048, 04069054, 04069068, 04069074, 04069078, 04069084, 04069088, 04069092, 04069094, 04069097, 19019036
- 11) Skim Milk Powd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21050, 04022125
- 12) Whole Milk Powd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17011150, 04022950, 23099028, 23099048
- 13) Dried Yogurt, Sour Cream, Whey, and Products of Milk Constituen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31050, 04039045, 04039055, 04039095, 04041015, 04041090, 04049050
- 14) Concentrated Milk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29170, 04029190, 04029945, 04029955, 04029990
- 15) Cream, Sour Cream, Ice Cream, and Milk Bevere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13025, 04039016,

- 21050020, 22029028
- 16) Butter and Butter Substitute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04013075, 04022190, 04039065, 04039078, 04051020, 04052030, 04052070, 04059020, 21069026, 21069036
- 17) Other Dairy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15179060, 17049058, 18062026, 18062028, 18062036, 18062038, 18062082, 18062083, 18062087, 18062089, 18063206, 18063208, 18063216, 18063218, 18063270, 18063280, 18069008, 18069010, 18069018, 18069020, 18069028, 18069030, 19011030, 19011040, 19011075, 19011085, 19012015, 19012050, 19019043, 19019047, 21050040, 21069009, 21069066, 21069087
- 18) Suga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950, 17029020
- 19) Sugar-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Canada: 17019148, 17019158,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9058, 17029068, 17049078, 18061015, 18061028, 18061038, 18061055, 18061075, 18062073, 18062077, 18062094, 18062098, 18069039, 18069049, 18069059, 19012025, 19012035, 19012060, 19012070, 19019054, 19019058, 21011238, 21011248, 21011258, 21012038, 21012048, 21012058, 21039078, 21069046, 21069072, 21069076, 21069080, 21069091, 21069094, 21069097
- 20)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 Specific Tariff Rate Quota for Chile: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17049078, 18061028, 18061038, 18061055, 18061075, 19012070, 19019054, 19019058, 21069046, 21069076, 21069080, 21069094, 21069097
- 21) Beef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Japan: 02011050, 02012080, 02013080, 02021050, 02022080, 02023080
- 22)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Japan: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17049078, 18061055, 18061075, 21069046
- 23)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Malaysia: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17049078, 17049068, 17049078, 18061055, 18061075, 21069046
- 24) Cheese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61008, 04061018, 04061028, 04061038, 04061048, 04061058, 04061068, 04061078, 04061088, 04062028, 04062033, 04062039, 04062048, 04062053, 04062063, 04062067, 04062071, 04062075, 04062079, 04062083, 04062087, 04062091, 04063018, 04063028, 04063038, 04063048, 04063053, 04063063, 04063067, 04063071, 04063075, 04063079, 04063083, 04063087, 04063091, 04064070, 04069012, 04069018, 04069032, 04069037, 04069042, 04069048, 04069054, 04069068, 04069074, 04069078, 04069084, 04069088, 04069092, 04069094, 04069097, 19019036
- 25) Skim Milk Powd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21050, 04022125
- 26) Whole Milk Powd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17011150, 04022950, 23099028, 23099048
- 27) Concentrated Milk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29170, 04029190, 04029945, 04029955

- 28) Cream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13025
- 29) Butter andc Butter Substitute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13075, 04022190, 04039065, 04039078, 04051020, 04052030, 04059020, 21069026, 21069036
- 30) Organic Butter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51020
- 31) Other Dairy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22950, 04029990, 04031050, 04039095, 04041015, 04049050, 04052070, 15179060, 17049058, 18062026, 18062028, 18062036, 18062038, 18062082, 18062083, 18062087, 18062089, 18063206, 18063208, 18063216, 18063218, 18063270, 18063280, 18069008, 18069010, 18069018, 18069020, 18069028, 18069030, 19012015, 19012050, 19019043, 19019047, 21050040, 21069009, 21069066, 21069087, 22029028
- 32) Cheese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Peru: 04061008, 04061018, 04061028, 04061038, 04061048, 04061058, 04061068, 04061078, 04061088, 04062028, 04062033, 04062039, 04062048, 04062053, 04062063, 04062067, 04062071, 04062075, 04062079, 04062083, 04062087, 04062091, 04063018, 04063028, 04063038, 04063048, 04063053, 04063063, 04063067, 04063071, 04063075, 04063079, 04063083, 04063087, 04063091, 04064070, 04069012, 04069018, 04069032, 04069037, 04069042, 04069048, 04069054, 04069068, 04069074, 04069078, 04069084, 04069088, 04069092, 04069094, 04069097, 19019036
- 33) Condensed and Evaporated Milk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Peru: 04029170, 04029190, 04029945 and 04029955
- 34) Processed Dairy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New Zealand: 04022950, 04029990, 04031050, 04039095, 04041015, 04049050, 04052070, 15179060, 17049058, 18062082, 18062083, 18063270, 18063280, 18069008, 18069010, 19011040, 19011085, 19012015, 19012050, 19019043, 19019047, 21050040, 21069009, 21069066, 21069087, 22029028
- 35)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Peru: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17049078, 18061015, 18061028, 18061038, 18061055, 18061075, 18062073, 18062077, 18062094, 18062098, 18069039, 18069049, 18069059, 19012025, 19012035, 19012060, 19012070, 19019054, 19019058, 21011238, 21011248, 21012038, 21012048, 21012058, 21039078, 21069046, 21069072, 21069076, 21069080, 21069091, 21069094, 21069097
- 36) Raw and Refined Sugar and Sugar Containing Products - Country-Specific Tariff-Rate Quota for Viet Nam: 17011150, 17011250, 17019130, 17019148, 17019158, 17019950, 17022028, 17023028, 17024028, 17026028, 17029020, 17029058, 17029068, 17049068, 17049078, 18061015, 18061038, 18061055, 18061075, 18062073, 18062077, 18062094, 18062098, 18069039, 18069049, 18069059, 19012025, 19012035, 19012060, 19012070, 21012038, 21012048, 21012058, 21069046, 21069094

37) 일부 TRQ는 30년까지 제공되나 지면관계로 20년까지만 표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협정문 참조.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부표 1-6. 베트남의 TRQ 양허현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Unmanufacture of tobacco, tobacco refuse	500	525	550	575	600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Unlimited

단위: 톤

주: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240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부 록 2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분석과 시사점

1. TRQ 논의 동향

- WTO 농업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낮은 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는 관세할당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임.
 - 특히 각국은 낮은 관세율로의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수입차액(rent)의 분배문제를 해소하고 이들 수입물량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수입권 경매, 과거실적배분, 수입허가, 선착순 등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운영해오고 있음.
- 1996년 이후 진행된 각국의 UR 협상 결과의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의 다양한 관리방식이 무역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별 이행계획서에서 양허된 의무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

적하면서,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한 수입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WTO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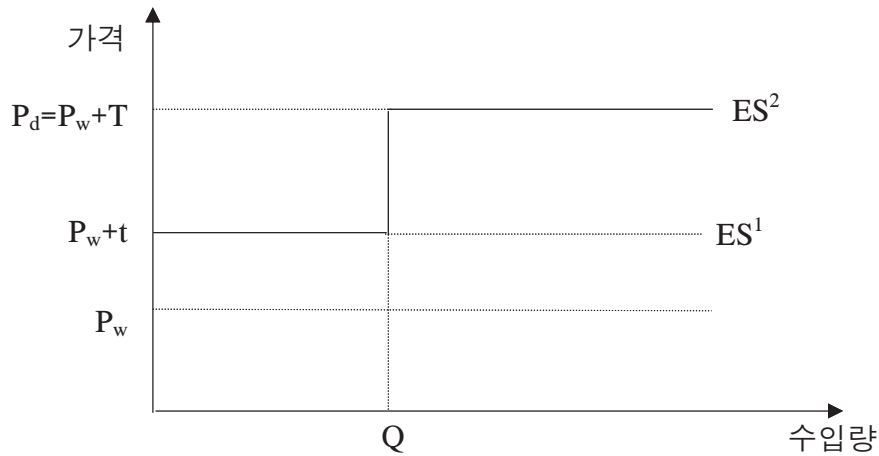
- 이에 TRQ 물량 수입관리 규율은 WTO DDA 협상을 통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반면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은 UR 이후 비관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하지만 WTO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예측가능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 TRQ 수입관리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인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TO 농업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다양한 TRQ 물량관리방식에 대한 국제적 운영상황과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물량관리방식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고, WTO DDA 농업협상의 TRQ 관련 규범 강화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을 찾고자 함.

2. TRQ 수입물량의 국제적 운영실태

2.1. TRQ제도의 경제적 개념

- UR 농산물 협정에 의해 합의된 관세할당(TRQ)제도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수출국에 현행 혹은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의 관세화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와 같이 수입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생긴 수출입국 간 타협의 산물임.
- 경제적 측면에서 TRQ제도가 갖는 의미를 <부도 2-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세할당제(TRQ)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설정된 시장접근물량(Q)까지는 낮은 세율(t)이, 그리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T)이 부과됨.
 - 이러한 이중관세제도와 함께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이 경쟁적이고 수입국이 소국이라는 가정은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을 두 개의 수평선으로 나타내게 함. 여기서 ES^1 는 세계시장가격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t) 부과 시의 초과공급곡선이며, ES^2 는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T)하 초과공급곡선임.
 - 따라서 실제 수입시장에서의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은 시장접근물량까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S^1 과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ES^2 로 나뉘지고, 한편 여기서 P_d 와 P_w 는 각각 국내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을 나타냄.

부도 2-1. TRQ 제도의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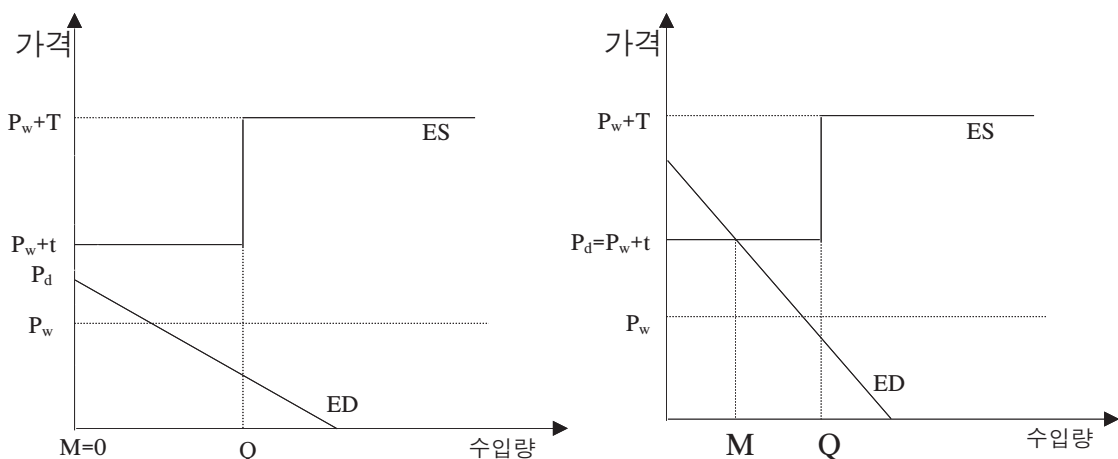
- 엄밀한 의미에서 관세할당제는 수입국으로의 교역량유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량제한조치는 아니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부과되는 고율관세가 수입금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통적 수입쿼터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
-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설정된 고율관세보다 큰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관세할당제는 수량 제한적 수입쿼터제와 상이할 것임.
 - 즉 실질적으로 관세할당제가 수입쿼터제와 달리 보다 큰 무역기회를 보장할 조건은 $(P_d - P_w) > T$ 에서임.
 -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만 고율관세부과 후에도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이 조건은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질 일종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실제 관세할당제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수입국의 국내 수입수요상황을 보여주는 초과수요곡선에 의해 결정될 것임.
- 경제 이론적으로 수입수요곡선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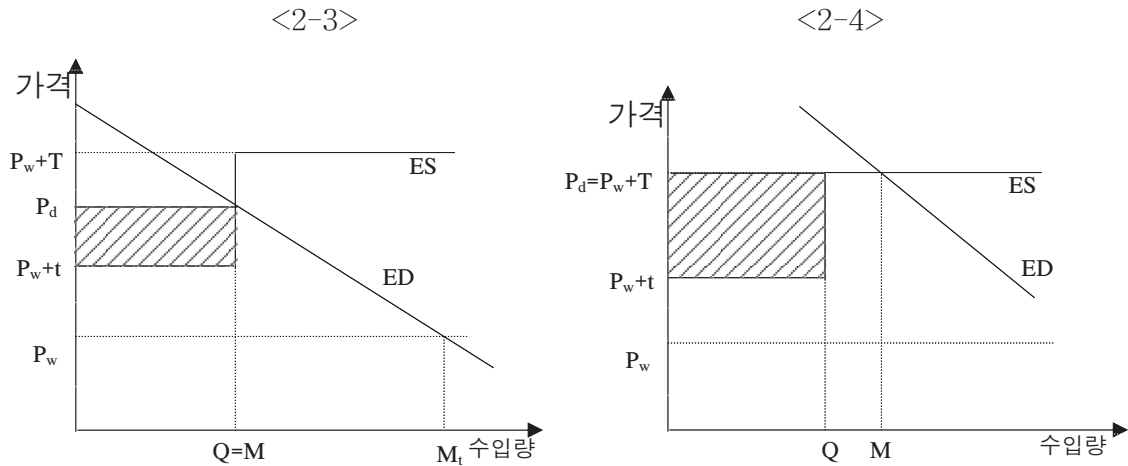
- 첫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국제가격에 시장 접근물량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이 합해진 것으로 표시되는 수출공급곡선(ES^1)하에 위치하는 경우임. 예를 들어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품목이거나 국내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 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국의 수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음($M=0$).
- 둘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수요 곡선이 국제가격에 시장접근세율 부과 시의 수출공급곡선(ES^1)상에 위치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일정량의 수입을 발생시키나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가 보장된 시장접근물량보다는 적은 교역이 이루어질 것임($0 < M < Q$).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할당제는 수입량이 저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쿼터량보다 적은 한 통상적인 저관세로 인한 수입과 같은 기능을 발휘함. 이 때 관세할당제는 하나의 단일관세에서 수입되는 경우와 같고 국내외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수입차액은 발생치 않음.
- 셋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두 개의 수출공급곡선, ES^1 과 ES^2 사이에 위치하며 정확하게 수입이 양허된 시장접근량($M=Q$)만큼 이루어지는 경우임. 이러한 상황은 관세할당제를 단순한 관세조치에 의한 수입제도와 구별되게 함.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량은 만약 관세할당제가 시행되지 않고 단지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때 이루어지는 수입량(M)에 비해 적음. 따라서 실제 낮은 관세 부과 시에 야기되는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수입량만이 유입되는 이 같은 상황은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수입차액을 발생시킴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입기회와 수입량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야기함. 만일 낮은 관세율에 의한 시장 접근량의 수입권의 조건 없는 배분은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협 없는 쿼터렌트(Rent)에 해당하는 $R = Pd - (Pw + t)$ 만큼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함.
-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높은 수입수요로 인해 수입수요 곡선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하는 고관세하의 수출공급곡선(ES^2)상에 위치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을 넘는 수입에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충분하여 실제 수입량은 양허된 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됨. 이 때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관세를 더한 값, 즉 $P_d=(P_w+T)$ 이고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당 수입차액은 $R=T-t$ 수준임. 이러한 수입차액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최대 이윤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위에 언급된 관세할당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실제교역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도 2-2>와 같음.
 - <부도 2-2>의 <2-1>과 <2-2>에서처럼 관세할당제(TRQ)하에서 실제 수입량(M)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Q)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국내외 가격차에 기인한 수입차액(Quota rent)이 발생치 않으나 실제 수입량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차액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차액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이 누구에게 할당되느냐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혹은 수출국, 생산자단체, 수입국 정부 등에 귀속됨.

부도 2-2. TRQ 제도와 실제 교역상황
 <2-1> <2-2>





주: 빗금 친 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야기되는 수입차액을 나타냄.

- <부도 2-2>의 <2-3>과 <2-4>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당 수입차액은 국내가격에서 세계가격에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부과되는 저세율을 더한 값을 빼 것이고 총수입차액은 단위당 차액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곱한 값임. 그러나 이론적으로 국내외시장조건에 따라 수입국의 상황이 <2-3>과 <2-4>의 경우일지라도 종종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전부가 수입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부가적인 행정요건이 요구되어 시장접근물량 수입권 획득에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때 비록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낮은 세율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은 설정된 물량보다 작을 수 있음.
- 또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중 선착순제도나 수입허가를 통한 수입권 배분방식은 수입업자에게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량이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더라도 실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Q*)은 설정된 물량(Q)이 내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임(부도 2-3의 <3-1> 참조).
 - 한편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증량되어 실제 양허된 시장접근 수입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낮은 세율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음.

즉 $Q < Q^*$. 특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국내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이 경우 시장 접근물량은 내생적 쿼터(Endogenous quota)의 성격을 가지며 구속(Binding)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부도 2-3의 <3-2> 참조). 이러한 경우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입차액은 설정된 시장 접근물량이 아닌 실제 수입된 시장접근물량에 기초하여 계산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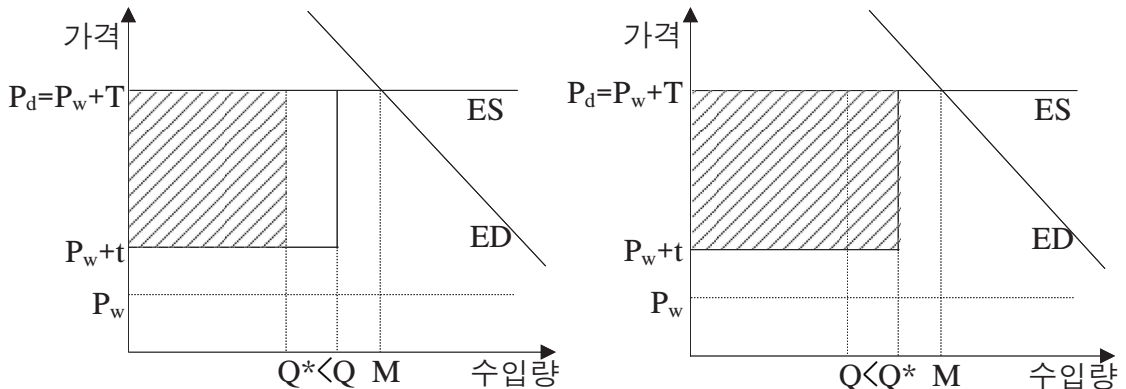
부도 2-3. TRQ 제도와 시장접근이행률 차이

<3-1> 낮은 이행률

<3-2> 높은 이행률

(거래비용발생 및 수입관리방식의 문제)

(=내생적 쿼터)



주: 빗금 친 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야기되는 수입차액을 나타냄.

2.2. TRQ 물량 수입관리의 국제적 운영현황

2.2.1. TRQ 수입관리 방식

-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임.
 - 특히 각국은 낮은 관세율로의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수입차액(rent)의 분배문제를 해소하고 이들 수입물량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수입권 경매, 과거실적배분, 수입허가 등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운영해오고 있음.

- 우선 가장 최근에 WTO 사무국에 의해 발간된 TRQ 관리방식과 수입이행률 관련 자료(2013)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운영 중인 수입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관세할당제는 2011년 기준으로 39개 국가에서 총 1,094품목에 대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중 약 43.6%에 해당하는 476개 품목은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가 아닌 단일 실행관세(Applied Tariffs)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²¹
 - 따라서 WTO 회원국에 의해 실제적 의미에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618개 품목임.
- 한편 WTO 회원국의 관세할당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은 대략 9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²² 단일관세적용(Applied tariff),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공매(Auction), 과거실적배분(Historical importers), 수입국영무역(Import state trading), 생산자단체 혹은 협회(Producer Groups and Associations), 혼합방식(Mixed Allocation Methods), 기타(Other) 등으로 구분됨<부표 2-1>.
 - 위와 같이 9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TRQ 관리방식 중 국제적으로 가장

²¹ 물론 단일관세만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각국의 이행계획서상에 관세할당제 사용의 권리를 보유한 이들 품목은 비록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각국의 의지에 따라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함.

²² TRQ 품목의 설정을 통해 시장접근물량을 유지하는 WTO 회원국은 어떻게 각국이 관세할당제를 유지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많이 쓰이는 것은 단일관세(43.6%), 수입허가(20.7%), 공매(8.6%), 과거실적배분(8.2%), 혼합방식(7.7%), 선착순(7.2%), 국영무역(2.5%) 등의 순임.

부표 2-1. WTO에 통보된 TRQ 물량의 관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중(2011년 기준)

관리 방식	단일 관세	선착순	수입 허가	공매	과거 실적	국영 무역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 타	합계
품목 수	476	81	226	94	89	27	7	84	10	1,094
전체차지비중(%)	43.6	7.2	20.7	8.6	8.2	2.5	0.6	7.7	0.9	100

주: 여기서 기타는 수입관리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방식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 이렇게 WTO 회원국은 각국의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중임.
 - UR 농업협상결과 TRQ 제도가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입관리의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수입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임.
-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성이 높은 수입관리방식으로 알려진 단일실행관세, 선착순, 수입허가, 수입권공매 등의 비중이 지난 10년간(2002~2011년) 평균 기준으로 전체 수입관리방식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 알려진 과거실적배분,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은 18.2%로 나타남<부표 2-2>.
 - 전체 TRQ 설정 품목 중 단일관세 적용으로 TRQ 물량을 배분하는 비중은 2002년 42.1%에서 2011년 43.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수입권공매, 과거실적배분, 국영무역, 혼합방식의 경우도 차지 비중이 증가하였음.
 - 반면에 지난 10년간(2002~2011년) 전체 TRQ 설정 품목 중에서 선착순과 수입허가를 통해 TRQ 물량을 배분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음.

부표 2-2.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별 품목 수 및 비중 변화 추이(2002~2011년)

단위: 개수, %

관리방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일관세	602	605	605	538	537	498	498	497	497	476
비중(%)	42.1	42.2	42.2	45.8	45.9	45.7	45.7	45.6	45.6	43.6
선착순	170	170	170	122	122	76	76	79	81	81
비중(%)	11.9	11.9	11.9	10.4	10.4	7	7	7.1	7.2	7.2
수입허가	347	358	351	226	225	225	226	226	227	226
비중(%)	24.3	25	24.5	19.3	19.2	20.7	20.7	20.7	20.8	20.7
구매	94	84	84	71	71	73	73	73	73	94
비중(%)	6.6	5.9	5.9	6	6.1	6.7	6.7	6.7	6.7	8.6
과거실적	105	105	105	89	89	89	89	89	89	89
비중(%)	7.3	7.3	7.3	7.6	7.6	8.2	8.2	8.2	8.2	8.2
국영무역	26	27	28	26	27	26	26	26	26	27
비중(%)	1.8	1.9	2	2.2	2.3	2.4	2.4	2.4	2.4	2.5
생산자단체	8	7	6	6	7	7	7	7	7	7
비중(%)	0.6	0.5	0.4	0.5	0.6	0.6	0.6	0.6	0.6	0.6
기타	5	5	5	4	4	4	4	4	4	4
비중(%)	0.3	0.3	0.3	0.3	0.3	0.4	0.4	0.4	0.4	0.4
혼합방식	68	68	75	87	84	83	82	83	83	84
비중(%)	4.8	4.7	5.2	7.4	7.2	7.6	7.5	7.6	7.6	7.7
불특정	5	5	5	5	5	8	9	9	6	6
비중(%)	0.3	0.3	0.3	0.4	0.4	0.7	0.8	0.7	0.5	0.5
전체 TRQ 품목 수	1,430	1,434	1,434	1,174	1,171	1,089	1,090	1,093	1,093	1,094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 TRQ 품목 수는 2002년 1430개, 2003년과 2004년 1434개, 2011년 1094개 등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함<부표 2-2> 및 <부표 2-3>.
 - 첫째, 신규가입국(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의 가입협상 결과 새로운 TRQ 품목 출현
 - 둘째, 동유럽국가의 EU 가입(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이나)으로 인한 TRQ 품목의 감소
 - 셋째, 양허표 수정(XXVIII조)을 통한 TRQ 도입 및 폐지(캐나다, 중국, 몰도바, 대만 등)
- TRQ 설정 품목 수 기준으로 노르웨이(232개), EU(117)²³, 아이슬란드(90개), 콜롬비아(67개), 한국(63개), 베네수엘라(62개), 미국(54개), 남아공(53

- 개) 등의 순으로 많은 수의 TRQ 품목이 운영 중임<부표 2-3>.
- TRQ 물량이 설정 중인 품목 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WTO 사무국 통보자료에 의하면 TRQ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나라(10개)를 비롯하여 일본(4개), 캐나다(1개), 태국(6개), 인도네시아(1개), 인도(3개), 필리핀(1개), 바베이도스(1개) 등 27개 품목에 대해 사용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수입국영무역 방식에 의해 관리되는 총 27개 품목의 약 37%에 해당하는 10개 품목이 우리나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모든 TRQ 물량을 국영무역을 통해 운영하는 품목은 2품목(쌀과 참깨)이며, 기존에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되던 고추, 마늘, 양파, 메밀, 팥, 대두 등 8개 품목은 국영무역과 함께 수입권 공매 혹은 실수요자 배 등 혼합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임.

²³ EU 15개국의 경우 91개 품목, EU 25개국으로 확대 이후는 117개 TRQ 품목을 운영 중임.

부표 2-3.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중(2011년 기준)

국가	관리방식	단일 관세	수입 허가	과거 실적	공매	선착순	국영 기업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타+ 불특정	계
미국	-	-	-	-	-	33 (0.61)	-	-	16 (0.30)	5 (0.09)	54
중국	-	1 (0.01)	-	-	-	-	-	-	6 (0.6)	3 (0.3)	10
EU	1 (0.01)	64 (0.55)	6 (0.05)	-	20 (0.17)	-	-	-	-	26 (0.22)	117
일본	-	14 (0.70)	-	-	-	4 (0.06)	-	-	-	2 (0.10)	20
호주	1 (0.50)	-	1 (0.50)	-	-	-	-	-	-	-	2
캐나다	1 (0.50)	6 (0.29)	5 (0.24)	-	4 (0.19)	1 (0.05)	-	-	4 (0.19)	1 (0.50)	22
뉴질랜드	3 (1.00)	-	-	-	-	-	-	-	-	-	3
한국	1 (0.02)	21 (0.33)	16 (0.25)	4 (0.06)	-	10 (0.16)	3 (0.05)	8 (0.13)	-	-	63
스위스	5 (0.18)	10 (0.36)	1 (0.04)	4 (0.14)	-	-	-	8 (0.29)	-	-	28
아이슬란드	45 (0.50)	-	-	45 (0.50)	-	-	-	-	-	-	90
노르웨이	212 (0.92)	1 (0.01)	7 (0.03)	12 (0.50)	-	-	-	-	-	-	232
이스라엘	2 (0.17)	5 (0.42)	1 (0.08)	-	-	-	-	3 (0.25)	1 (0.08)	-	12
대만	-	-	-	13 (0.59)	-	-	-	4 (0.18)	5 (0.23)	-	22
태국	1 (0.04)	12 (0.52)	-	-	-	6 (0.26)	4 (0.17)	-	-	-	23
인도네시아	1 (0.50)	-	-	-	-	1 (0.50)	-	-	-	-	2
필리핀	3 (0.21)	-	10 (0.71)	-	-	1 (0.07)	-	-	-	-	4
인도	1 (0.25)	-	-	-	-	3 (0.75)	-	-	-	-	67
콜롬비아	53 (0.79)	-	5 (0.07)	2 (0.03)	-	-	-	7 (0.10)	-	-	67
바베이도스	6 (0.17)	29 (0.80)	-	-	-	1 (0.03)	-	-	-	-	36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attachment excel 파일로부터 재정리.

2.2.2. TRQ 물량의 수입이행률

- TRQ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계획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으로 나타나는 수입이행률(Quota fill rate)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WTO 회원국에 의해 통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평균적으로 TRQ 물량의 수입이행률은 2002~2011년 10개년 평균 약 63%수준임.
- 2002~2011년 10개년 평균기준으로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행률은 기타(100%), 국영무역(70%), 단일관세(68%), 혼합방식(65%), 생산자단체(63%)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선착순(43%), 과거실적배분(57%), 수입허가(59%), 공매(59%) 등은 상대적으로 수입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TRQ 물량의 수입관리방식으로 기타 방식으로 수입한다고 통보한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 콜롬비아 세 나라가 있는데, 이들 국가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배분(캐나다), 추첨시스템(이스라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입이행률이 전통적으로 높음.

부표 2-4. TRQ 관리방식별 수입이행률 비교

단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수입관리방식											
단일 실행관세	69	66	67	63	63	69	69	73	72	73	68
선착순	50	49	46	49	48	58	39	40	28	27	43
수입허가	54	52	53	55	60	57	58	56	59	86	59
수입권 공매	51	56	48	59	64	63	61	57	62	64	59
과거실적배분	64	58	61	63	63	63	61	58	44	32	57
수입국영무역	73	66	76	75	71	74	73	69	54	N.A	70
생산자단체 및 협회	75	60	68	47	63	60	62	56	75		63
기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혼합방식	61	66	67	66	67	66	63	69	64	60	65
불특정	44	43	45	45	45	49	57	49	46	46	47
연도별 단순 평균 수입이행률	64	62	63	62	64	66	64	63	60	61	63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 순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은 관세, 선착순, 공매 등 시장지향적 수입관리 방식의 이행률이 과거실적배당이나 국영무역 등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에 비해 보다 높을 것임.
- 그러나 WTO 사무국이 배포한 수입관리 방식별 이행률 통계를 살펴보면 TRQ 수입관리방식별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인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의 시장 접근 이행률이 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WTO 회원국 정부가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민감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회원국 정부가 이들 품목의 수입관리방식 선택에 신중한 접근이 있었음.
 - 민감품목들은 대부분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등의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을 통해 관리해 왔으며, 이러한 민감품목 특성상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의 수입이행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임.
- 한편 주요 WTO 회원국별 가장 최근에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시장접근이행률을 살펴보면 <부표 2-5>와 같음.
 - 최근 연도 기준으로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을 지표로 한 평균 시장접근이행률은 브라질(100%), 호주(97%), 스위스(92%), 이스라엘(91%), 캐나다(85%)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인도(10%), 태국(45%), EU(48%), 미국(55%), 노르웨이(58%) 등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이행률이 낮은 편임. 우리나라(61%), 중국(61%), 대만(61%), 일본(65%)은 전체 WTO 회원국의 단순 평균 이행률 수준(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5. 주요국의 TRQ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이행률(2002~2011년 평균)

단위: %

국가	방식	실행관세(AT)	선착순(FC)	수입허가(LD)	구매(AU)	과거실적(HI)	국영기업(ST)	생산자단체(PG)	기타(OT)	혼합방식(MX)	미통보(NS)	단순수입이행률
미국	-	-	47	-	-	-	-	-	-	73	47	55
중국	-	-	-	87	-	-	-	-	-	35	-	61
호주	98	-	-	-	-	96	-	-	-	-	-	97
브라질	100	-	-	-	-	-	-	-	-	-	-	100
캐나다	-	66	70	-	78	99.6	-	-	100	98	-	85
뉴질랜드	78	-	-	-	-	-	-	-	-	-	-	78
콜롬비아	71	-	68	100	71	-	-	-	100	88	-	82
EU	-	65	51	-	68	-	-	-	-	-	-	48
일본	-	-	57	95	-	98	-	-	-	8	-	65
한국	46	-	42	42	83	93	41	-	-	81	-	61
스위스	83	-	83	95	100	-	-	-	-	97	-	92
노르웨이	78	-	22	46	93	-	-	-	-	-	-	58
아이슬랜드	73	-	-	78	-	-	-	-	-	-	-	75
필리핀	67	-	-	-	53	100	-	-	-	-	-	59
바베이도스	n.a	-	n.a	-	-	n.a	-	-	-	-	-	n.a
태국	100	-	34	-	-	22	77	-	-	-	-	45
인도	4	-	-	-	-	15	-	-	-	-	-	10
인도네시아	n.a	-	-	-	-	n.a	-	-	-	-	-	n.a
이스라엘	54	-	100	-	100	-	-	-	100	100	-	91
대만	-	-	87	43	-	-	-	-	-	72	-	61
필리핀	82	-	-	-	57	-	100	-	-	-	-	79

주 1) WTO 사무국에 통보된 연도는 회원국별로 일부 상이하여 가장 최근에 통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2)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당국가가 미통보로 인해 수입이행률 계측이 어려움.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국영무역 방식을 통해 TRQ 물량을 수입하는 8개 국가들의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영무역 수입이행률은 인도(15%), 태국(22%), 한국(93%), 일본(98%), 캐나다(99.6%), 필리핀(100%)의 순이었음.

- 참고로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TRQ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2.2.3. TRQ 물량 수입의 부가조건 요구 현황

- 여러 WTO 회원국이 시장접근물량 관리대상으로 통보한 품목의 수입 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TRQ 물량 관리 1,094개 품목의 약 12%에 해당하는 132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고 있음.
 -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에 자주 요구되는 부가적인 조건에는 과거무역경험, 수출증명, 수입할당량제한, 국내산구매규정 등이 있으며 종종 동시에 두 가지 부가조건을 요구하기도 함<부표 2-6>.
 - 다만 전체 TRQ 대상 품목에서 부가조건이 요구되는 품목 비중은 2002년 17.1% 수준에서 2011년 12.1%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음.

부표 2-6. TRQ 물량 수입을 위한 추가조건 부과현황

단위: 개수

부가 조건	TRQ 품목 수				
	2002	2005	2007	2009	2011
국내산 구매규정	43	12	11	11	12
수입할당량 제한	98	20	22	20	20
수출증명	22	22	22	22	22
과거무역경험	72	68	68	69	70
국내산구매+수입할당량제한	3	1	1	1	1
국내산구매+과거무역경험	0	0	0	0	0
수출증명+수입할당량제한	1	1	1	1	1
과거무역경험+수출증명	6	6	6	6	6
부가조건 품목 수(A)	245	130	131	130	132
전체 TRQ 품목 수(B)	1,430	1,174	1,089	1,093	1,094
TRQ 전체 품목 차지비중(A/B, %)	17.1	11.1	12.0	11.9	12.1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2.2.4. 주요국의 국영무역 품목별 TRQ 수입물량의 국제적 운영상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10개년(2002~2011년) 평균 기준으로 다양한 TRQ 수입관리 중 국영무역을 통한 평균 수입이행률은 70%로 전체 평균 63%보다는 높았던 반면에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통보한 기타(100%) 방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WTO 회원국 중 국영무역 방식을 통해 특정 품목의 TRQ 물량을 수입한다고 통보한 국가는 총 8개 국가의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영무역 수입이행률은 인도(15%), 태국(22%), 한국(93%), 일본(98%), 캐나다(99.6%), 필리핀(100%)의 순이었음.
 - 참고로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TRQ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우나 1995~2000년 통보자료로 계산한 결과 국영무역 수입이행률은 인도네시아 100%, 바베이도스 99%였음.
- 국영무역 방식을 통한 TRQ 물량 수입이행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국가별/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상이함.
 -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가별 품목별 수입이행률은 필리핀 쌀(100%), 한국 팥과 참깨(100%), 일본 밀(93%) 인도 해바라기유 (54%), 태국 마늘, 옥수수, 팜유(0%)까지 매우 다양한 수입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낮은(혹은 무세)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물량의 수입관리 차원에서 어떤 국가가 국영무역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TRQ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 UR 농업협상 결과로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관세화로 전환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의 부족, 국제가격의 상승, 국내가격의 하락 등 다

- 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TRQ 물량 수입이행률이 낮을 수 있는 것임.
- 물론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 조치를 받은 기간 동안의 한국, 일본, 필리핀의 경우는 설정된 TRQ 물량이 수출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보장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수입물량으로 해석되어야 함.

부표 2-7. 일본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낙농품	95	92	98	96	99	99	100	96	99	n.a	97	과거 무역 경험
밀	88	99	98	92	95	92	92	91	94	n.a	93	과거 무역 경험
보리	100	100	100	100	100	93	90	100	98	n.a	98	과거 무역 경험
쌀	100	99	100	100	100	90	99	99	99	n.a	98	과거 무역 경험

부표 2-8. 캐나다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버터	100	100	99	100	100	99	99	100	n.a	n.a	99.6	없음

부표 2-9. 한국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감자	66	100	100	98	96	100	89	63	89	없음
양파	30	100	100	100	100	91	92	86	87	없음
마늘	100	72	100	100	100	93	79	28	84	없음
고추	31	67	99	98	91	93	97	95	84	없음
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없음
생강	100	53	100	100	100	97	100	100	94	없음
쌀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97	없음
메밀	100	100	100	100	98	100	100	87	98	없음
땅콩	65	88	100	84	100	100	100	100	92	없음
참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없음

주: WTO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3년도 쌀 수입이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은 연도별 실제 수입기간 산정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됨. 특히 2003년도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으로 실제로는 100% 수입이행률을 보였다고 볼 수있음. 아마도 2003년도 말에 수입되지 않은 쌀 의무수입 물량을 2004년도 초로 이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하였으나 WTO 수치는 100%를 넘는 수입이행률은 100%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판단됨.

부표 2-10. 태국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양파	100	12	100	57	53	100	92	97	95	...	78	없음
마늘	0	0	0	0	0	0	0	0	0	...	0	없음
코코넛	4	3	5	5	4	4	4	4	4	...	4	없음
옥수수 (사료용)	0	0	0	0	0	0	0	0	0	...	0	없음
팜유	0	0	0	0	0	0	0	0	0	...	0	없음
누에고치	6	3	17	26	9	7	10	6	4	...	10	없음

부표 2-11. 필리핀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쌀	100	100	100	n.a	n.a	n.a	n.a	n.a	n.a	n.a	100	없음

부표 2-12. 인도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옥수수	...	0	0	0	0	0	1	3	0.8	없음
유채유/ 겨자유	미통보											없음
해바라기 유	...	69	27	46	64	52	없음

부표 2-13. 인도네시아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년 이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1995~2000년)	부가조건
쌀	100	100	100	100	100	100	미통보	100	국내산구매조건

부표 2-14. 바베이도스의 국영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위: %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년 이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1995~2000년)	부가조건
쌀	94	100	100	100	100	100	미통보	99	없음

○ GATT/WTO 체제에서 국영무역제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실제 1947년 설립된 GATT 역시 국제무역의 합법적인 참가자로서 국영무역 기업을 승인하고 GATT 1947과 1994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하여 비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지침을 마련하였음.

- 이처럼 국제적으로 국영무역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왜곡의 가능성과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영무역의 정의와 의무사항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영무역에 관한 GATT 혹은 WTO 차원의 규범은 전통적으로 국영무역 자체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영무역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무역왜곡효과의 제거 및 투명성확보에 있음.
 - 이로 인해 지금까지 WTO 차원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 부족과 이들 기업의 무역왜곡 가능성을 근거로 국영무역기업에 적용되는 규율 강화에 대한 것임.
 - 선 수출국영무역의 경우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약속 우회를 막기 위한 규범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고, 수입국영무역의 경우는 수입제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즉 국영무역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통보장치의 강화와 잠재적 수출보조효과나 수입제한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영무역은 식량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국영무역 관련 GATT 제1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 및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ory way)에 입각하는 한 국영무역제도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현행 WTO 규정이 수입국영무역기업에게는 이미 시장접근물량, 저율관세와 고율관세 등에 대한 양허 등을 통해 이미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매우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운영은 투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히 수입국영무역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보다는 일반적인 TRQ 관리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음.
- 참고로 GATT 제1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

sideration)’을 근거로 우리나라 쌀의 경우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만일 이 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선 아예 용도 제한 없이 쌀을 수입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만일 상업적 고려 차원에서 반드시 밥쌀용을 수입해야 한다면 UR 협상 타결 후 1995~2004년까지 1차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공용으로만 쌀을 수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승자박이 될 것임.
- 실제 UR 협상은 TRQ 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없이 관세화 전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UR 협정 이행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다양한 TRQ 수입관리 방식의 출현뿐 아니라 TRQ 물량 수입을 위한 자격제한, 용도제한 등 부가적 조건들이 많이 출현한 것임.
- 물론 앞으로 DDA 농업협상에서 어떤 형태로 TRQ 물량 관리 방식에 대한 규율이 제정되는가에 따라 용도제한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이미 한미 FTA 협정에서 이와 같은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쌀은 양허제외로 해당 사항 없음).
- 특히 국제적인 관행은 이해 당사국이 국제규범 위반을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실제 분쟁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명확히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가능한 자국에 유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을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음.
- 만일 이해당사국이 국제규범 위반을 근거로 분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기간 이해당사국 간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이 구성되어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관행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 즉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미리 포기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이익 확보 측면에서 분쟁해결기구에 상대국을 제소하는 경우도 많으나 다른 나라로부터 제소를 많이 당하는 이유이기도 함.

- 우리의 경우도 너무 국제적 무역 분쟁 발생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 특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이 쌀의 경우 1kg 당 341엔이 부과되는 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일본이 매년 미국쌀 5만~10만 톤을 TRQ 물량 증량 방식으로 추가 구매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리 밥쌀용 쌀 수입은 향후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여 미국, 호주 등 쌀 수출국과의 가입 협상 시 오히려 밥쌀용 쌀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과 호주와의 협상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협상 카드를 미리 포기한 것이 될 수도 있음.
 - 일본이 미국, 호주 등에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추가적인 TRQ 물량을 제공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실제 TPP 가입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쌀에 대한 현행관세 유지와 TRQ 물량 추가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 관철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영무역 관리 품목을 줄여 현재는 2개 품목(쌀과 참깨)을 제외하고 기존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대부분을 혼합방식(국영무역+공매, 국영무역+실수요자 배정 등)으로 전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자료에는 너무 많은 품목이 국영무역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적으로 국영무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적극적으로 TRQ 물량 관리 방식을 자발적으로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리고, 실제 운영상황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품목별 TRQ 수입관리 방식을 WTO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부표 2-15. 우리나라 WTO TRQ 품목별 운영 현황

구분	품목	수입관리기관	비고
단일방식 운용 : 52품목			
국영무역 (2품목)	쌀, 참깨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지정된 기관만이 수입 판매 및 수입이익금 징수
수입권공매 (3)	인삼, 생강, 밤	유통공사, 산림조합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
실수요 자 배정 (47)	실적 기준 등 배정 (18)	보리, 중돈,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코올, 보조사료, 종계, 버터,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등	한국 전분·당협회, 제지협회, 콘협회, 농협, 유가공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양계협회, 주류산업협회 등
	선착순 (29)	감귤류, 연유, 감자(종자용), 매니옥펠리트, 유장, 호밀, 탈지분유, 잣 등	농협, 국립종자원, 대한잡사회, 생사수출입조합, 묘목협회, 산림조합 등
여러 방식 혼합운용 : 11품목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3)	마늘, 양파, 메밀·기타곡물	유통공사	국영무역품목이나 일부물량 수입권공매 방식 혼합 운용
국영무역 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대두	유통공사,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	국영무역품목이나 일부물량 과거실적기준 배정방식 혼합 운용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1)	고추	유통공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과거실적기준 배정방식 혼합 운용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5)	감자(종자용 이외), 천연꿀, 참기름과 그 분획물, 낙화생, 대추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입권공매방식 이외 과거실적기준 배정 등 방식 혼합 운용
계	63품목	21기관	

2.2.5. TRQ 운영관련 국제적 분쟁 현황

- WTO 출범 이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497개의 분쟁 사례가 있으며, 그중 농산물은 31개, 농식품은 109개의 분쟁사례가 있으며, 특히 TRQ 물량 수입 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은 다음과 같은 4건이 있음.²⁴
 - EU 바나나 수입제도 및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미국, 과테말라, 온두

²⁴ WTO 분쟁사례 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참조

라스, 멕시코 제소)

- EU 냉동가금육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브라질 제소)
- 필리핀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미국 제소)
- 미국 땅콩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아르헨티나 제소)

가. EU 바나나 TRQ 분쟁

- 전통적으로 EU는 바나나 수입과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국가(일명 ACP 국가)의 바나나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왔음.
 - 그 결과, EU는 WTO 농업협정 이행과정에서 기존 ACP 국가로부터의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약 860만 톤의 TRQ 물량에 대해서는 ACP 국가에 무관세로 수입기회를 보장해 주었으나 비ACP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TRQ 물량(200만 톤)을 설정하고 1톤당 100ECU의 시장접근 세율을 부과하였음.
 - 또한 TRQ 물량을 초과하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도 ACP 국가 외 비ACP 국가 간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남미에 진출하여 바나나를 수출하고 있는 치키타(Chiquita)나 돌(Dole) 등의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 중남미 바나나 수출국이 제소한 것임.
- WTO 패널은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이 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정하였음.
 - EU의 바나나 TRQ 물량에 대한 회원국 간 차별적 관세부과는 최혜국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WTO 정신에 반하는 규범 위반으로 판정됨.
 - 그러나 EU가 WTO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자 미국은 핸드백, 지갑, 건전지, 커피메이커, 목욕용품 등 EU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함.
 -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미국과 EU는 바나나 무역 분쟁 해소에 전격 합의

하고 EU가 미국 및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며, 2001년 7월 1일 미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함.

부표 2-16. WTO 농산물 TRQ 관련 분쟁 사례

제소 연도	제소국	피소국	분쟁 번호	주요 내용	결과
1995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EU	DS16	EU는 바나나 수입제도와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가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ACP)의 바나나에 대해서는 기존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TRQ 물량(약 860만 톤)에 대해서는 무세를 부과하였으나 비ACP 국가에 대해서는 TRQ 물량(200만 톤)에 대해서는 톤당 100ECU의 세율을 부과하였으며, TRQ 물량을 초과하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도 ACP 국가 외 비 ACP 국가 간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이 제소함. 중남미에 진출하여 바나나를 수출하고 있는 치키타(Chiquita)나 돌(Dole) 등 미국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기업들에겐 차별적인 제도임.	WTO는 EU의 바나나 수입 정책이 WTO 규정에 어긋나고, 차별적이라고 1999년 판정하였으나 EU가 WTO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자 미국은 핸드백, 지갑, 건전지, 커피메이커, 목욕용품 등 EU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함.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미국과 EU는 바나나 무역 분쟁 해소에 전격 합의하고 EU가 미국 및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며, 2001년 7월 1일 미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8년 동안을 끝어온 미·EU 바나나 전쟁이 종료됨. WTO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2012년 분쟁이 종결됨.
1997	브라질	EU	DS69	브라질은 EU가 냉동 가금육에 대해 1992년 양자협상을 통해 합의해 준 무관세 TRQ 물량(15,500톤)이 자국에만 적용되는 시장접근 기회라 주장하며, EU가 WTO 출범 이후 이 물량을 최혜국 대우원칙에 따라 글로벌(global) 쿼터로 다른 국가들에게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제소함.	분쟁 패널은 브라질이 주장과 달리 EU의 가금육에 대한 TRQ 수입 할당 방식으로 최혜국 대우에 입각한 글로벌 쿼터로 배분하는 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수입허가 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 관련 정보는 최소한 개시 21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구범 위반일 판정함. 1998년 양측의 합의로 종결함.

나. EU 냉동가금육 TRQ 분쟁

- 브라질은 EU가 냉동가금육에 대해 1992년 양자협상을 통해 브라질에 합의 준 무관세 TRQ 물량(1만 5,500톤)이 자국에게만 적용되는 시장접근 기회라 주장하며, EU가 WTO 출범 이후 이 물량을 최혜국 대우원칙에 따라 글로벌(global) 쿼터로 다른 국가에게도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한 것에 이의를 제기함.
 - WTO 분쟁 패널은 브라질이 주장과 달리 브라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EU가 냉동가금육에 설정된 TRQ 할당물량을 최혜국 대우에 입각하여 글로벌 쿼터로 배분하는 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 다만 EU가 TRQ 물량 운영 시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 관련 정보는 최소한 개시 21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WTO 규범 위반이라 판정하였고, 1998년 양측의 합의로 종결함.

다. 필리핀 돼지고기, 닭고기 TRQ 분쟁

- 미국은 필리핀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수입과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가 TRQ 수입물량의 수입 승인 시기를 지체하여 실제 연도별로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된 TRQ 물량이 수입되지 않아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에 피해를 보았다며 제소함.
 - 필리핀의 TRQ 운영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 차원의 규정 변경으로 양국이 2008년 상호 합의로 종결하였음: TRQ 물량 수입 승인 공표시기를 연초로 앞당기고, TRQ 물량의 수입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할당받은 TRQ 물량보다 수입 이행률이 낮을 경우 차년도에 수입할당 물량을 줄여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착순 방식으로 TRQ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됨.

라. 미국 땅콩 TRQ 분쟁

-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땅콩 TRQ 수입과 관련하여 UR 협상 당시 양국 간 합의된 바와 달리 아르헨티나 땅콩에 대한 수입보장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업적 손실을 입었다며 협의를 요청하였음.
 - 그러나 1997년 아르헨티나가 분쟁 협의 요청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측컨대 앞서 진행된 브라질과 EU 간 냉동가금육에 대한 TRQ 물량 국별 쿼터보장과 관련한 패널 판정결과를 보고 아르헨티나 측이 더 이상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지금까지 이루어진 WTO 차원의 TRQ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TRQ 물량 관리와 관련하여 수입관리방식이 차별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아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해당사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우선 협의를 요청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TRQ 수입이행률이 낮다고 분쟁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국제적인 TRQ 물량 수입이행률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TRQ 수입이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한 건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분쟁 건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TRQ 물량 운영방식이 뒤에 논의되는 WTO DDA 협상의 TRQ 운영 관련 발리 합의안, 그리고 한·미 FTA에서 합의된 약속 수준에서 투명하게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수입이행률이 낮더라도 무역분쟁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판단됨.

부표 2-17. WTO 농산물 TRQ 관련 분쟁 사례(계속)

연도	제소국	피소국	분쟁번호	주요 내용	결과
1997	미국	필리핀	DS74	필리핀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 관련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쿼터신청 승인 지체로 연도별 TRQ 수입이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소: 필리핀 정부가 TRQ 수입물량의 수입승인 시기를 지체하여 실제 연도별로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된 TRQ 물량이 수입되지 않아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	필리핀의 TRQ 물량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 변경으로 양국이 2008년 상호 합의로 종결: TRQ 물량 수입 승인 공표시기를 연초로 앞당기고, TRQ 물량의 수입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TRQ 수입이행률이 낮을 경우 차년도에 수입할당 물량을 줄여나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착순 방식으로 TRQ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됨.
1997	아르헨티나	미국	DS111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땅콩 TRQ 수입과 관련하여 UR 협상 당시 양국 간 합의된 바와 달리 아르헨티나 땅콩에 대한 수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업적 손실을 입었다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아마도 미국이 UR 협상 당시 아르헨티나에게 보장한 국별 쿼터량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1997년 아르헨티나의 분쟁 협의 요청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태임: 추측컨대 앞서 진행된 브라질·EU 간 냉동가금육에 대한 TRQ 물량 국별 쿼터 보장과 관련한 패널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아르헨티나 측이 더 이상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

3. TRQ 수입관리 관련 WTO DDA 협상 논의 동향과 합의내용

3.1. WTO DDA 협상 논의 동향

- TRQ 물량 수입관리 규율은 WTO DDA 협상을 통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이후 진행되어온 각국의 UR 협상 결과의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미

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이 운영하는 시장접근 물량의 다양한 관리방식이 무역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별 이행계획서에서 양허된 의무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한 수입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음.

-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 관세할당제도(TRQ)하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영무역, 수입권공매제도 등 다양한 수입관리방식들이 ‘GATT 1994’ 제1조(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양허표), 제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제13조(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2001년 출범한 WTO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자국의 실질적인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인 관세할당제도(TRQ)의 확립과 무역 왜곡적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음.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들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 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반면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은 UR 이후 비관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하지만 WTO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예측가능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부표 2-18. TRQ 물량 수입관리 관련 농산물 수출입국의 기본입장

수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관리지침 제정: 호주 등 케언즈국가, 미국, 인도 등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RQ 관리의 예측가능성·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② 수입국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출국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접근 보장 ③ 수출국 공급자 간 또는 국내외산 간 무차별원칙 보장 ④ 추가적인 부수적 요건 부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산 사용 또는 수출조건부 TRQ 배정 등 철폐 - 생산자단체를 통한 TRQ 관리(국영무역 지정 포함) 폐지 - 소매업자·최종소비자에게의 TRQ 배정 제한 금지 - 최종 소비용도 제한 요건 부과금지 ⑤ 미소진 TRQ 재배분원칙 마련 ⑥ In-quota관세 및 Mark-up 인하 등
수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적인 관리지침 제정: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NTC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RQ 관련 규범은 예측가능성·투명성·공정성 및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 ② 수입국의 다양한 품목별 국내시장상황(수급, 가격, 기존질서 등) 고려 다양한 수입관리방식 인정

- 지난 UR 농업협정이 TRQ 수입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담고 있지 않아 TRQ 수입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입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수출국이 주장하는 수입국영무역의 철폐 주장이나 품목군 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금지, 최종용도제한 금지 등은 수입국의 입장에서 TRQ 수입관리의 자율권이나 국내정책과의 연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에 DDA 농업협상은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수입관리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에게 신축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되, 수출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TRQ의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제도적 장치²⁵의 마련

²⁵ 예컨대, TRQ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다 시장지향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

과 TRQ 소진율이 낮을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타협안이 도출되어 논의 중임.

3.2. TRQ 수입관리 관련 WTO 농업협상 합의(안)의 주요 내용

-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농산물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 개선을 비롯하여 개도국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을 위한 평화조항 적용, 농업분야 일반서비스 국내허용보조 항목추가(홍수통제, 가뭄관리, 토양보전)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
-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② 농업(agriculture), ③ 면화(cotton), ④ 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됨.
 - 조기수확 대상 의제란 DDA 모든 의제의 일괄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분야로 정한 것을 의미함.
- 특히 농업의제 중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합의는 2008년 12월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과 2012년 9월 브라질이 개도국 수출국 모임인 G20 국가를 대표하여 제안한 TRQ 관리방식 규율 강화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TRQ 관리개선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수입이 해당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 일명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
- 각료결정문 형태로 합의된 TRQ 물량 수입관리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

계 본문(15개 조문)과 부속서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은 90일 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처리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임.

- 핵심적인 내용은 UR 수입허가절차협정문에 기초하여 TRQ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 내 다시 재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15조문, 2개 부속서)에 따르면 우선 TRQ 수입물량 관리는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UR 협정문의 ‘수입허가’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동 협정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 관련 정보는 최소한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함.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항(a)은 정보공개 시한규정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최소한 21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TRQ 관련 정보는 TRQ 개시 90일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허가절차협정문보다 강한 시한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과 관련하여 TRQ 물량 신청자는 오직 하나의 행정기관에만 (쿼터)를 신청하도록 함. 이는 TRQ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정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은 원칙적으로 1개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까지 허용하고 있어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TRQ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셋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f)와 관련하여 쿼터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그리고 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f)항(신청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선착순 배분의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수입허가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임.

- 넷째,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5(i)와 관련하여 TRQ 허가서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단위로 발급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고추에 대한 수입권을 할당할 경우 경제적 물량이 최소한 1톤이라고 가정하면 이보다 적은(예: 0.1톤) 단위로 수입을 허가할 경우 실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i)에서는 경제적인 수량에 대한 허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임.
- 다섯째, TRQ 소진율(TRQ 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은 공개되어야 하며, TRQ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2항과(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의 행정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 일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TRQ 미소진이 필요 이상 제약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에 기인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함. 즉 TRQ 소진율(fill rate)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미소진 쿼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섯째, 민간에게 할당된 수입허가권이 정상적인 상업적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경우, 수입국은 미소진 이유를 조사하고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j)항에 따라 새로운 수입허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미소진 원인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또한 TRQ가 미소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동 수입권을 다른 잠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이는 TRQ가 미소진되었을 경우 재할당에 관련된 조항임. 핵심은 수입국은 부속서 E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재할당 메커니즘²⁶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일곱째,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합의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부표 2-19. TRQ 관리방식 관련 각료결정문 주요 내용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투명성 강화 (1~12조)	TRQ 개시 및 신청 등 공표(최소 90일 전, 30~60일 내에 신청처리), 불필요한 지연 금지 등 TRQ 운영의 투명성 강화	TRQ 관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수입허가 관련 고시 개선 필요
미소진 메커니즘 (부속서 A)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 등 경우에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있어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이 없으나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영향 있음.
미소진 메커니즘 재검토 (13~15조)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의 개도국 S&D 유지여부 등 결정 - 미합의 시, 적용 유보 선진국 적용제외	개도국 S&D 수정여부 관련 미국과 중국 등의 대립을 감안,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도출
미소진 메커니즘 유보 선진국 (부속서 B)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 시, 목록에 등재된 선진국들은 적용 유보여부 결정가능	미국,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재 - 바베이도스 등 개도국들은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배제의 명확화를 위해 등재를 요구한 것임.

²⁶ 미소진 쿼터 메커니즘은 부속서 E에서 다룬다. 핵심 내용은 모니터링 1차연도에 수입국이 TRQ 소진율(fill rate)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TRQ 소진율이 정의된 수준이 하인 경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소진 쿼터 메커니즘이 시작되고, 2년 연속 소진율이 정의된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수입국은 미소진을 개선하기 위해 TRQ 관리방법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만일 TRQ 소진율이 3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정의된 수준 이하이고, 연간 소진율이 최소 일정한 %씩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TRQ 관리방법을 선착순 또는 자동수입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TRQ 물량 수입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합의사항의 하나는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 내 다시 재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 추어야 한다는 것임.
- 각료결정문에 제시된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입국이 TRQ 물량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수입국의 TRQ 쿼터 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과 TRQ 물량 수입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함. 즉 TRQ 물량에 대한 수입실적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수입이행률이 낮은 경우 이해당사국은 수입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협의는 해당 품목의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함.
 - 둘째, 설정된 TRQ 물량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품목의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함.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이 납득하였다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음.
 - 셋째, 3차년 이후 기간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①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유지되거나 주어진 기간 동안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3년 연속 소진율이 40~65% 사이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8%p 미만 또는 소진율이 40% 이하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12%p 미만일 경우, ③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상황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미소진 이유에 대해 수출국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④ 수출국들이 메커니즘 발동을 요구할 경우이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부표 2-20.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구조

3년 연속 TRQ 소진율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	발동 여부
65% 초과		×
65% 이하~40% 초과	8%p(5.3%p) 이상	×
	8%p(5.3%p) 미만	○
40% 이하	12%p(8%p) 이상	×
	12%p(8%p) 미만	○

주: ()안의 수치는 개도국의 경우임.

- 한편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해당 수입국은 선착순 방식 (first come, first served)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TRQ 수입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최소 2년간 전환된 수입관리 방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수입관리방식 전환결정 시에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가 요구됨.
 - 다만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현행의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되, 채택한 수입관리방식을 방식을 최소한 2년간 유지함. 또한 개도국의 경우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이후 연평균 TRQ 소진율 증가율이 선진국의 2/3수준 이상 상승하면 미소진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됨.

3.3. 시사점

- 우리나라는 TRQ 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우리나라가 다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다면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인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²⁷
- 하지만 TRQ 물량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언제든지 수출국의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미소진 사유(검역, 가격요인 등)에 대한 협의의무 등 TRQ 관리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UR 협상과 달리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현재 TRQ 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에서 TRQ 물량 소진율이 65% 미만이면서 선착순(실수요자 배정) 이외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은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동식물위생(SPS) 등 검역상의 요인, 국내외 수급 및 가격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소진되고 있다는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가 되어야 하므로 항상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별로 객관적인 TRQ 운영 상황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함.
- 향후 WTO DDA 농업협상 타결 이후에는 TRQ 수입관리방식의 규율과 정

²⁷ 발리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개도국우대 차원에서 TRQ 관리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등 TRQ 미소진의 경우 개도국에게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막판까지 참여하게 의견을 대립하였다.

보제공 의무의 강화가 예상되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수입관리대행기관이나 추천기관은 너무 많은 상태로 여겨지므로 기존의 TRQ 물량 관리의 전문조직(예: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활용하여 TRQ 수입관리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은 향후 WTO 차원에서 강화가 예상되는 TRQ 관리방식의 규정 이행 차원(TRQ 운영상황 통보 및 정보제공, 단일한 TRQ 수입관리기관지정, TRQ 미소진을 제고장치 마련 등)뿐만 아니라 국내 불공정거래관행의 제거나 경쟁제한(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판단됨.
 - 물론 기존의 관련 조합, 협회, 기관은 새롭게 구성되는 TRQ 관리 전문조직에 해당 품목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TRQ 물량관리를 위해 직원 파견, 자문, 조언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한편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TRQ 물량 관리 관련 결정문(15조문, 2개 부속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TRQ 관리제도 운용상 일부 품목의 수확시기를 고려한 수입 시기조절, 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실수요자에게 수수료 및 회비 징수 등은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발리 각료결정문은 속성상 합의하기 용이한 분야와 내용을 조기수확(Early Harvest)한 형태이므로 지속적으로 WTO에서 논의 중인 TRQ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규율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
- 현재 WTO/TRQ 관리품목 가운데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향후 WTO 규율에 저촉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 종우, 종돈,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오렌지, 감귤, 천연꿀, 인삼류 등임.
- 또한 맥주맥 및 맥아, 보리, 버터 등 일부 품목은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과 연계하거나 최종 소비용도 제한(가공용 혹은 외화획득용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의 국내수급 동향을 감안한 TRQ 수입물량 조절행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FTA 협상에서 새로운 TRQ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FTA/TRQ²⁸는 관리대상 품목, 적용 관세율, 할당물량, 관리방식, 관리기관 등에 있어 WTO/TRQ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FTA 협정 간 TRQ 대상 품목과 관리 방식의 차이 존재하여 향후 TRQ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WTO와 FTA 간에는 품목의 중복률이 70.4%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한-칠레, 한-EFTA, 한·ASEAN FTA, 한·미, 한·EU FTA 간에는 유장 및 치즈 이외에는 중복되는 품목이 없음.
 -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FTA에서 TRQ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치즈,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자두, 강낭콩, 건조채소, 조제분유 등은 FTA에서 추가로 생겨난 TRQ 품목임.²⁹

²⁸ WTO 차원의 다자적 TRQ와 FTA협상에서 합의된 양자차원의 TRQ를 구분하기 위해 TRQ를 'WTO/TRQ'와 'FTA/TRQ'로 구분하여 명기한다.

²⁹ 기 발효한 한·칠레, 한·EFTA, 한·ASEAN FTA의 TRQ 관리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2009-429),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2009-430),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2009-431) 등에 의해 국내적으로 규율된다.

- WTO/TRQ 관리방식은 지정기관배분(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혼합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FTA/TRQ에서는 수입권공매와 실수요자배정 방식이 주로 사용되기로 합의되었음.
 - 동일 품목에 대한 TRQ 수입 관리방식이 WTO와 FTA에서 합의된 것이 다른 경우 향후 FTA가 발효 혹은 진전됨에 따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협상 전략 수립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방식 합의결과는 현재 WTO DDA 협상 합의안보다 더 강화된 규율이 적용됨.
 - 우선 TRQ 물량은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 또한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든지 쿼터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TRQ 물량배분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가능한 최대한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생산자단체 배분금지와 함께 국내산구매조건, 재수출조건, 가공업자 한정, 최종 사용용도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였음.
 -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은 양국이 합의에 의해 설정한 TRQ 물량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착순 방식이 기본 방식임을 천명하고 있음.
 - 다만 수입차액징수나 수입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민감 품목은 TRQ 물량 배분 방식으로 수입권공매제와 수입허가제를 채택하여 협정문 부록(2-나-1)에 대상품목, 관리주체,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반면에 국영무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하에 운용 가능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는 가급적 기존 WTO에서 TRQ를 도입한 품

목을 중심으로 TRQ를 설정하고, 최대한 수입관리방식도 동일 품목의 경우 동일한 수입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원칙적으로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은 WTO 규율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요구됨.

- 앞으로 추진될 TRQ 제도 개선은 WTO와 FTA의 상호관련성 고려, 시장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효율적인 대외협상 추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FTA를 통한 FTA/TRQ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율관세 수준, 관리방식과 관리기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의 WTO/TRQ 제도의 틀을 변모시킬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WTO/TRQ와 FTA/TRQ는 품목별·협상별 관리방법, 관리기관, 저율관세 수준 등의 유사성 및 차별성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협상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관심이 높은 수입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행위가 국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국내 큰 피해로 귀결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대두의 경우 한·미 FTA에서 과거실적을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두가공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 전 수입실적을 마련하기 위해 WTO/TRQ 물량의 배분을 적극 요구한 바 있음.
 - 치즈 및 조제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FTA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TRQ가 중복적으로 도입된다면, TRQ를 통해 사실상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향후 WTO DDA 타결 이후에는 TRQ 수입관리방식의 규율 강화 및 객관적이며 투명성 있는 정보제공 의무 부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FTA 협정마다 민감품목 보호명분으로 TRQ 물량이 설정됨에 따라 WTO와 FTA 이행약속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WTO/FTA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구성과 제도정비가 필요함.

- 현재의 WTO/FTA TRQ 물량 수입관리대행기관이나 추천기관은 지나치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FTA 추진 등으로 더욱더 복잡한 양태를 보이는 TRQ 제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지님.
 - 이는 중층적인 행정비용 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낳아 국내 농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기존의 TRQ 물량관리의 전문조직(예: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활용하여 TRQ 수입관리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은 향후 WTO 차원에서 강화가 예상되는 TRQ 관리방식의 규정 이행 차원(TRQ 운영상황 통보 및 정보제공, TRQ 미소진을 제고장치 마련 등)뿐만 아니라 국내 불공정거래관행의 제거나 경쟁제한(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판단됨.
- 국영무역 등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을 가급적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영무역 등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품목은 현재 수입관리의 규율 강화, 고율관세의 대폭인하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 WTO 협상 추이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제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FTA/TRQ 관리방식이 일반적으로 지정기관배정 방식이 아닌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물론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민간수입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가격 안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경쟁력 격차)가 적고 비교적 농가소득에서의 비중이 작아 수입차익의 징수 필요성이 적으며, 쿼터량보다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과 같이 TRQ 물량 수입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실제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국영무역을 통해 TRQ 물량 관리를 하는 품목이 2개 품목(쌀과 참깨)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WTO 자료에는 UR 협상 타결 직후 운용된 10개 품목이 국영무역을 통해 TRQ 물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TRQ 물량 관리 방식을 실제 운영상황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품목별 TRQ 수입관리 방식을 통보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품목의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TRQ 물량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저율관세와 고율관세 사이의 격차가 적은 품목, 그리고 국내 수급상 필요에 의해 일부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품목 등은 사실 TRQ 확대 또는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따라서 이들 품목들은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만일 수입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품목들은 동식물 검역 등의 다른 비관세조치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표적인 품목은 조란, 잠종, 뽕나무 등 묘목류, 종우, 감자(종자용), 조(종자용), 수수(종자용), 호밀(종자용), 인조꿀, 참깨유박, 매니옥펠리트, 고구마(신선), 누에고치 등임.

부표 2-21. WTO 회원국의 연도별 TRQ 품목 수

WTO 회원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ustralia	2	2	2	2	2	2	2	2	2	2
Barbados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Brazil	2	2	2	2	2	2	2	2	2	2
Bulgaria	73	73	73	73	73	Accession EU in 2007				
Canada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Chile	1	1	1	1	1	1	1	1	1	1
China	10	10	10	10	7	7	7	7	7	7
Colombia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Costa Rica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Croatia	9	9	9	9	9	9	9	9	9	9
Czech Republic	24	24	24	Accession EU in 2004						
Dominican Republic	8	8	8	8	8	8	8	8	8	8
Ecuador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El Salvador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European Union(15개국) ³⁰	88	91	91	91	91	91	91	91	91	91
Guatemala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Hungary	70	70	70	Accession EU in 2004						
Iceland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India	4	4	4	4	4	4	4	4	4	4
Indonesia	2	2	2	2	2	2	2	2	2	2
Israel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Japan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Korea, Republic of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Latvia	4	4	4	Accession EU in 2004						
Lithuania	4	4	4	Accession EU in 2004						
Malaysia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Mexico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Moldova								3	3	3
Morocco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New Zealand	3	3	3	3	3	3	3	3	3	3
Nicaragua	9	9	9	9	9	9	9	9	9	9
Norway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Panama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Philippines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Poland	109	109	109	Accession EU in 2004						
Romania	12	12	12	12	12	Accession EU in 2007				

WTO 회원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Slovak Republic	24	24	24	Accession EU in 2004						
Slovenia	20	20	20	Accession EU in 2004						
South Africa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Switzerland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Chinese Taipei	22	22	22	17	17	17	17	17	17	17
Thailand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WTO Membership on 4 April 2003	1	1	1	1	1	1	1	1	1
Tunisia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Ukraine	WTO Membership on 16 May 2008						1	1	1	1
United States of America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Venezuela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Viet Nam	WTO Membership on 11 January 2007					3	3	3	3	3
Total Number of Scheduled Tariff Quotas	1,430	1,434	1,434	1,174	1,171	1,089	1,090	1,093	1,093	1,094

주: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W/11>.

각료회의 결정문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TRQ 관리방식은 UR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에 명시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협정은 농업협정과 아래 세부 요건의 제약 아래 완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³⁰ EU 15개국의 경우 91개 품목, EU 25개국으로 확대 이후는 117개 TRQ 품목을 운영 중임.

2. 수입허가절차 협정의 1조 4(a)항과 관련 농업 TRQ가 협상되고 양허되었을 때에 관련 정보가 TRQ 개시 최소 9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쿼터배분 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개시 이전에 같은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1조 6항과 관련 TRQ 신청자는 오직 한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
4. 이 협정 3조 5(f)항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해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 (“as and when received” case)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과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simultaneous” case)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발행이 관련 쿼터의 효과적인 개시일보다 늦게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협정의 1.6조 아래 신청 연장의 경우는 예외이다.
5. 3조 5(i)항과 관련 TRQ 허가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쿼터 소진율(fill rates)은 통보되어야 한다.
7. 수입관리 절차가 협정의 3.2조, 곧 조치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증(absolute necessity tes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약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민간업자에 의해 소유된 수입허가가, 정상적인 운영자가 같은 상황에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완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경우 허가를 배분하는 회원국은 미활용 이유를 검토하고, 3조 5(j)항에 따라 새롭게 허가 배분을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9. 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이에 대한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입국은 미소진 수입권한을 소유한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다른 잠재적 사용자에게 수입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배분(country-specific allocation)처럼 쿼터가 제3국의 민간 운영자에 의해 소유된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한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10. 이 협정의 3조 5(a)(ii)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되, 1조 11항의 조건아래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양해서 아래 회원국의 의무 사항 이행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tion) 체계를 갖춰야 한다.

13. 이 합의문의 운영에 관한 검토는 합의문을 채택한 후 4년차 전에 시행 하되 그 때까지 축적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쿼터 활용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검토의 전후 과정에서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부속서 A의 4항을 재확인하고 또는 미래 운영방식을 조정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하여 12차 각료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4항에 관한 일반 이사회의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2차 각료회의가 부속서 A의 4항을 현재대로 또는 개선된 형태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5항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위 1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조항의 연장에 관한 결정의 부재 시

부속서 A의 4항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부속서 A의 4항에 대한 적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회원국과 부속서 B에 제시된 회원국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A

1. 검토 첫해에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 위원회에 쿼터 의무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사항을 사무국(Secretariat)이 관리하는 추적 기록부(tracking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쿼터 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목적은 제기된 관심사항의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증진, 쿼터가 관리되는 방식과 그 관리방식의 특정 요인이 쿼터 미소진의 원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시장상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국은 해당 수입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해당 수입국은 이해 당사국에 제출한 모든 문서의 요약본을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된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해 당사국들은 논의와 제공된 문서를 기초로 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에 관한 명확한 진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회원국의 관심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2단계와 3단계의 미소진 체계(underfill mechanism)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고려될 수 있다.

2.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아 미소진 체계가 발동되면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쿼터의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들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

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들이 납득하였다면 이 사실은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기록되고 해당 관심사항이 “해결된(resolved)” 것으로 표시되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단,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3년 주기의 절차가 될 것이다).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3. 3차년 및 이후 검토 기간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

- a.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 혹은 해당 기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 b. 이전 3년 동안 연간 소진율 증가가 다음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 i. 소진율이 40%를 초과할 때 최소 8% 포인트
 - ii. 소진율이 40% 이하일 때 최소 12% 포인트
- c.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 상황 관련 논의가 모든 이해 당국들 사이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일 때
- d. 어떤 이해 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는 의향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4.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국은 신속하게 다음 쿼터 관리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국경에서 오직 선착순에 의한 배분, 또는 쿼터 상한 아래 요구에 따른 자동적, 비조건부 허가 중 제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이행할지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국은 수출 이해 당사국들과 상의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최소한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2년간의 실적이 적절히 통보될 경우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해당 관심사항이 “종료(closed)”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도국은 다른 쿼터 관리방식을 채택하거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미소진 체계아래 다른 쿼터 관리방식

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식은 해당 수입국에 의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 만약 소진율이 위 3(b)항에 제시된 연간 증가율의 2/3만큼 증가하였다면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회원국에 의한 미소진 체계의 이용 가능성은 그 체계 아래 다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한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B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El Salvador)

과테말라(Guatemala)

미국(USA)

참고 문헌

- 최세균 외. 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분석』. P1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현 외.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WTO. 201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TN/AG/S/26/Rev.1.
- 內閣官房 T P P 政府對策本部(2015. 10. 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 (T P P 協定) の概要.
- 두산백과사전.
- 시사경제용어사전.
- 시사상식사전.
- 외교통상용어사전.
- YBM All in English-Korean 사전.
- <웹페이지>
- TPP 협정문. <<http://www.mfat.govt.nz>>.
- TPP 협정문 요약. <USTR, <https://ustr.gov/tpp/#facts>>.
- USTR TPP 블로그.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blog>>.
- WTO 분쟁사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정책연구보고 P214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2.

발 행 2015.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전화 02-2275-6894 <http://www.seilfocus.com>

ISBN 978-89-6013-882-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